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강현철·류성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Proactive Legislative Evaluation of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연구책임자 :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ang, Hyun-Cheol

공동연구자 : 류성진(동의대학교 교수)
Yoo, Sung-Jin

2017. 11. 30.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따른 군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입법적 조치 필요

- 군내 인권침해 구제방안의 법제화
 - 군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배치 등의 입법적 의 무조치가 시행
 - ‘군인권보호관’의 신설을 의무화하면서 다른 법률의 제정을 입법의무로 부과 하고 있음

▶ 후속입법 조치의 미이행 상태의 지속

- 법률 시행 이후에도 ‘군인권보호관’ 관련 입법은 제정되지 않음
 - 기본법 시행 이전에 입법이 이루어져 군인권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부여한 입법의무를 국회 스스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입법부작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 신설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 호관’ 제도의 신설에 관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 국방부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음
 - 각 입법안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입법적 의무 이행이 필요

▶ ‘군인권보호관’ 제도 신설 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

- 현행 국회 입법안의 비교 검토를 통한 적정 입법대안의 제시
 - 입법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입법대안 제시
 - 비교대안적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대안의 적정성 검토
 - 비교법적 방법을 검토하여 입법대안 검토

II. 주요 내용

▶ 입법평가의 필요성

- 입법적 논의현황
 -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경과 검토
- 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석

▶ 군인권보호관에 관한 제도적 검토

- ombudsman 일반론 검토
 - 현재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ombudsman 제도에 관한 개략적 검토
-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 기본법 제정 전후에 있어서 제도도입 논의 현황과 주요 이슈 검토

▶ 입법평가

-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국가 기관 소속의 장단점 분석

- 별도의 독립기관을 두는 방안에 관한 장단점 분석
- 권한에 따른 평가
 - 직무의 내용에 따른 평가
 - 사후적 조치에 따른 평가
- 비교제도론적 평가
 - 영국의 군인권 ombudsman 제도
 - 독일의 군사ombudsman 제도
 - 미국의 사법적 군인권보호제도

▶ 입법대안 제시

-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
- 총칙 규정
 - 제명
 - 정의규정
 - 그 밖의 관련 규정
- 기구의 설치와 권한
 - 설치규정
 - 업무 및 절차규정
- 권리구제 방안

Ⅲ. 기대효과

- 군인복무기본법의 분석을 통한 군인권 보호와 구제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군인권보호관 입법을 위한 입법기초자료로 활용

KLRI

○ 군인권 보호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주제어 : 군인권, 군인권보호, 군인권보호관, 군인복무기본법, 입법평가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Legislative Measures for Resolving Human Rights Problems under the Legislation of Military Service Act
 - Legisl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in the Army
 - Legislative obligations such as suggestions, complaints, and placement of professional counselors for the relief of military human rights violations
 - It imposes the legislative obligation to enact other laws while mandating the creation of a “military human rights inspector”.

- ▶ Continuation of the non-compliance status of subsequent legislative measures
 - Legislation related to ‘military human rights officer’ is not enacted even after enactment of law
 - Although the legislation should be made before the enactment of the Basic Law and the institutional basis for the military human rights remedy should be established, the National Assembly itself does not fulfill the legislative duties assigned to the National Assembly.

- Efforts to resolve legislative omission
 - Currently, legislative proposals have been fil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system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 A plan to establish a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is also proposed as a legislation bill.
 - Review each legislation and make it necessary to fulfill legislative obligations

▶ Need to review measures to establish ‘military human rights officer’ system

- Present alternative legislation through comparison of current legislative proposals
 - Suggest alternative legislation using legislative assessment methodology
 - Review adequacy of legislative alternatives with an alternative method of comparison
 - Review legislative alternatives by reviewing comparative legal methods

II. Major Content

▶ Necessity of legislative evaluation

- Legal Discussion Status
 - Background and Legislative Review of the Basic Law of Military Service
- Analysis of main contents of Basic Law

▶ Institutional review of military human rights officers

- General review of the Ombudsman
 - A brief overview of the Ombudsman system currently being discussed at home and abroad
-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military human rights officers
 - Review the present status and major issues of introducing the system before and after enactment of the Basic Law

▶ Legislative assessment

- Evaluation on Institutionalization Measures
 - Evaluation according to organization
 - Analysis of strengths and weaknesses of 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National Assembly,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National Interest Commissio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nalysis of strengths and weaknesses about separate independent organization
 - Evaluation by authority
 - Evaluation according to contents of job
 - Evaluation according to the post-measure
- Comparative Institutional Evaluation
 - UK Military Human Rights Ombudsman Islands
 - German Military Ombudsman Islands
 - US judicial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 Suggest alternative legislation

- Necessity and Purpose of Legislation
- General Provisions
 - Exclamation
 - Definitions
 - Other relevant regulations
- Installation and Authority of the Organization
 - Installation regulations
 - Business and procedural regulations
- right to remedies

III. Expected Effects

- Use as basic data on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and relief through analysis of basic law of military service
- Use as basic data on legislation for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legislation
-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 ▶ Key Words : Military Human Rights,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Military Human Rights Protection Officer, Military Service Basic Law, Legislative Evaluation

목차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3
Abstract	7

제1장 서론 / 13

I. 연구의 목적	15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16

제2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19

I. 입법적 논의 현황	21
1.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경과	21
2. 「군인복무기본법」의 주요 내용	27
3. 「군인복무기본법」에 관한 소고	29
II.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입법적 불비	30
1. 옴부즈만 제도	30
2.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33

제3장 입법평가 / 37

I.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39
1.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39
2. 권한에 따른 평가	46
II. 비교제도론적 평가	48
1. 영 국	48

2. 독 일	56
3. 미 국	58

제4장 입법 대안제시 / 75

I. 입법방안	77
1. 서	77
2. 제 명	78
II. 총 칙	79
1. 목 적	79
2. 정의규정	80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그 밖의 규정	85
III. 기구의 설치와 권한	86
1. 설 치	86
2. 업 무	91
3. 자 격	94
IV. 권리구제	98
참고문헌	107
부 록	113
• 군인권 보호관 설치안 비교	115
• 종합 검토	117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118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137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56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 I. 연구의 목적
-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장 서론

I. 연구의 목적

17년 6월 22일 시행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은 군인복무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군인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 군인의 의무에 관한 사항, 병영생활에 관한 사항, 군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특별근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률은 ① 군내 인권침해사고에 대한 입법대응의 필요성, ② 기존 법령의 한계 극복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단순히 선언적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에 거치지 않고 권리구제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의 배치 등 군 내부에서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방안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의무화하면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따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입법의무가 법률로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에도 해당 법률이 제정되지 않음으로써 국회 스스로 입법의 부작위 상황을 초래하고 있음은 물론, 실제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별도의 법률제정 방안을 제시하여 입법의 불비를 보완하고 군인권의 실질적 보장 기관으로서 기능하게 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거치지 않고 새로운 옴부즈만 제도의 실질화

방안과 연계하여 제도적 활용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군인권보호관의 입법방안에 관한 다양한 논의에 대하여 각 방안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을 함께 제시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방법론으로서 사전적 입법평가 방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적합한 입법대안을 연구성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II. 연구의 범위와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입법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입법방안 중 제도도입에 적합한 기관구성에 관한 사항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그 논의를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각각의 사항에 대하여 입법론적 방법을 강구하고, 주요 국가의 제도적 사항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관련 분석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에 논의된 군인복무기본법 논의에 관한 사항을 연혁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기본법 제정의 입법적 배경과 입법경과 등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군인권보호관은 본질적으로 옴부즈만 제도를 그 제도적 출발점으로 하고 있으므로 옴부즈만의 일반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연혁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일반론적 관점의 옴부즈만에 관한 논의는 다양한 제도적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그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제도적 한계를 가지고 운영되거나, 제도도입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해외의 옴부즈만 논의과정과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일반적인 옴부즈만 제도의 논의의 현황 등을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옴부즈만 논의의 배경과 현황을 바탕으로 옴부즈만으로서의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논의의 현황과 주요 이슈에 관하여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논의된 일반 현황을 바탕으로 군인권보호관의 제도화 방안을 입법평가적 방법을 통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제도 신설에 관한 입법평가라는 점에서 기관구성별 비교분석 평가와 권한별 평가를 통하여 기관적정성과 권한적정성 및 기관과 권한의 공통적정성을 함께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어서 비교제도론적 평가는 영국, 독일, 미국의 군인권보호관 제도와 인권보호제도를 비교하여 비교분석 방법을 통한 적정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 국가의 특성에 따라 운영의 내용과 적정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각 국의 군사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지만, 군인권보호관이라는 단일 제도와 관련한 평면적 비교만을 진행한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상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 대안적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식적인 입법안이 아니라 법률제정을 진행할 경우 필요한 입법안의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입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과의 연계 검토를 통하여 적절한 입법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대안은 총칙적 규정은 물론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권한에 관한 사항,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입법평가 방법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각 연구방법론에 관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다만, 연구기간과 연구추진 등의 한계로 인하여 설문조사와 같은 사회학적 방법론과 비용분석과 같은 경제학적 방법론은 이를 배제하고 입법론적 방법과 비교법적 방법을 활용하여 제도적 최적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자간의 집필분야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책임자인 강현철 박사는 입법평가 분야 중 기관별 분야와 권한별 분야에 관한 사항을 집필하였으며, 공동연구자인 류성진 교수는 각 국의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집필하였다. 입법대안 도출 등에 있어서는 연구자간 상호 논의 등을 점검한 후 연구책임자가 책임집필의 형식으로 집필하였음을 밝힌다.

제2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 I. 입법적 논의 현황
- II.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입법적 불비

제2장

입법평가의 필요성

I. 입법적 논의 현황

1.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입법경과

(1) 서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군인의 의무사항에 관한 규율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이전에는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운영되었다. 이 규율은 1966년에 제정된 것으로 제정 당시에는 법률 위임의 근거가 없는 시행령이었으나, 1998년 「군인사법」 제47조의2¹⁾를 개정하면서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 시행령은 군인복무에 관한 포괄적 위임입법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²⁾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하여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³⁾ 이와 더불어 국군의 병영생활에 관하여 규율하는 「국군병영생활규정」은 국방부훈령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군인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군인권에 관하여는 「군인권업무훈령」을 통하여 인권업무에 관한 많은 사항을 규율하고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훈령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형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⁴⁾

1)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황창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2017), 37-39면 참조.

3) 현재 2010.10.28. 2008헌마638 결정. 위반이라는 소수의견이 있음.

4) 황창근, 위의 논문, 39면.

군인권에 관한 법률의 제정 논의는 다양한 각계의 요구와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와 정부에서 법률안을 마련하거나 제도화 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논의가 본격화한 것은 17대 국회인 2012년으로 이후 다양한 입법안이 제안되면서 부터이지만, 오랫동안 입법의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는 못하였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면서 기존의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하나의 법률안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으로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현재 판례 : 2008 헌마 638

<결정요지>

1.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기본권 침해에 관하여 아무런 규율도 하지 아니한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국민의 권리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방부장관 등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 지시’는 그 지시를 받은 하급 부대장이 일반 장병을 대상으로 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청구인들을 비롯한 일반 장병의 기본권 제한의 효과가 발생한다 할 것이므로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 및 지시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이하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이라 한다.)는 국군의 이념 및 사명을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로 인하여 군인들의 정신전력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 법령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군의 정신전력이 국가안전보장을 확보하는 군사력의 중요한 일부분이라는 점이 분명한 이상,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하여 불온도서의 소지·전파 등을 금지하는 규율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군의 정신전력에 심각한 저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의 도서로 한정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지키고 있고,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달성되는 군의 정신전력 보존과 이를 통한 군의 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임무의 효과적인 수행이라는 공익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군인의 알 권리라는 사익보다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법익균형성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이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살펴보면, 군인사법 제 47조의2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군통수권을 실질적으로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권한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다소 광범위하게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이와 같은 군인사법 조항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정당한 위임의 범위 내의 규율이라 할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을 준수한 것이다.

[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

국군 부대 내에 23종의 불온도서가 반입되는 것을 차단하라는 이 사건 지시는 23종의 도서를 불온도서로 지정함으로써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의 규범력과 결합하여 국군 장병을 직접 기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국군의 사명 수행의 특수성과 군복무관계의 특수성 및 군인의 지위에 대한 헌법의 특별한 취급에 비추어 보면, 이적단체인 한총련이 보내는 23종 도서의 부대 내 반입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군인의 정신전력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지시는 청구인들의 알권리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국민의 기본의무 중 하나로서 헌법 제39조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는 법령은 그 위헌성 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오직 국방의 의무라는 기본의무를 부과한 목적이 정당한지 또 그 내용이 합리적이고 공평한 것이었는지를 따짐으로써 충분하다. 이 사건 규율조항은 군의 정신전력 강화의 필요라고 하는 의무부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과 내용이 기본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입법자가 유의해야 하는 여타의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며, 부과의

공평성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과도하게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재판관 이강국의 반대의견]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 장병들은 헌법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선량한 국민으로서 국가는 이들의 기본권이 자의적으로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인사법 제47조의2는 ‘군인의 복무’라는 광범위하고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분야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며, 그 위임을 받은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 및 이 사건 지시는 위헌적인 위임조항에 근거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위헌으로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

이 사건 복무규율조항은 수범자인 군 장병들로 하여금 과연 어떠한 도서가 금지되는 도서인지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적용 가능성을 널리 열어두고 있는 조항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며, 핵심적 정신적 자유인 ‘책 읽을 자유’를 제한하면서 금지대상이 되는 도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한정하거나 지정권자 및 객관적 사전 심사절차를 규정하는 등 공익의 달성을 추구하면서도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채택하지 아니한 채 자의적인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위헌적인 복무규율조항에 근거한 ‘불온도서 차단’ 지시 역시 위헌으로서, 아무런 심사절차를 거친 바 없이 국방부장관 등이 일정 도서를 불온도서로 지정하여 군내에서 금지함으로써 군장병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그 위헌성에 관한 판단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2) 입법배경

이 법률의 제정배경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빈번한 발생과 이에 따른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추락이라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다.

군내 인권개선을 위한 노력은 2005년 병영문화개선대책위원회,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방부의 인권교육 정책,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등이 있었으며, 2014년에는 8월에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가 발족하고, 10월 국회에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위가 설치되어 활동하였다.⁵⁾

앞에서 언급했듯이, 군은 기본법 제정 이전에도 국방부 훈령의 형식으로 「국군병영생활규정」과 「군인인권업무훈령」을 제정하여 활용하였다. 이것은 기존의 군인 복무 및 지위에 관한 규율 법체계의 한계로 작용하였다. 시행령과 행정규칙에 따른 제도적 규율은 법률의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하위법령에 포괄적 위임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권보호에 관한 행정부 내부적 역할의 한계와 권한의 한계를 동시에 가지는 입법적 방안이었다고 할 것이다.

「군인복무규율」은 주로 인권보장의 측면보다는 군인의 복무에 따른 의무 사항을 규율하는 것으로 인권이나 그 구제절차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많은 결함을 가지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할 것이다. 이 훈령은 상위법의 위임근거 없이 군인에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적 효력에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군인인권업무훈령」은 군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인권교육, 군 인권상담, 군 인권실태조사, 군내 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등 군 인권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역시 훈령으로서의 한계를 가지는 입법적 불비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⁶⁾은 제32조에서 “장병기본권 등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면서, 제4항에서 “장병기본권의 보장 및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군인 복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입법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군인의 복무에 관련된 제반 환경을 개선·발전시킬 것을 규정하고(제1항), 국방부장관은 장병이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을 정

5) 황창근, 위의 논문, 37면.

6) 2006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7년 3월 29일 시행

립하고, 자기계발의 기회를 향유하며 군 복무에 대한 사회적 명예를 고양시킬 수 있는 제반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2항), 장병이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부대관리 체계를 발전시키고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제3항)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태도는 군인권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 그 입법적 결과가 법률로 제정되는 것은 이 법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되었다는 것은 군인 복무와 인권에 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입법경과

군인권에 관한 법률은 2012년 6월 25일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시작으로 약 10여개의 유사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별도로 청원안으로 이태호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의견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회내 논의와 법안을 기초로 국방위원장이 통합대안을 제기한 후 이 통합대안을 법률안으로 의결하였다. 이 제안된 의안들은 크게 그 성격상 군인의 인권보호에 중점을 두는 방안과 군인의 복무관계에 중점을 두는 방안으로 나눌 수 있다.⁷⁾

<국방위원회 소관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⁸⁾

의안번호	의안명칭	제안자
1900289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	안규백의원 등 15인
1901018	군인복무기본법안	한기호의원 등 10인
1910948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찬열의원 등 10인
1912299	군인권보호법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1912454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영근의원 등 18인
191230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7) 황창근, 위의 논문, 40면.

8) 황창근, 위의 논문, 41면 표 1.

의안번호	의안명칭	제안자
1900155	군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기본법 제정	이태호외 4인
1912764	군인권기본법안	심상정의원 등 11인
1914017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1914167	군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이개호의원 등 29인
191782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스민의의원 등 10인

이 법률의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법률은 17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어 19대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국회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거쳐서 입법과정에 반영되었으며, 국방위의 입법관련 공청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법안에 반영되었다. 특히 법안에 직접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군옴부즈만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내에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핵심적인 사안에 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이 법률의 제정 의의는 군인의 권리·의무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현재 「군인사법」 및 대통령령인 「군인복무규율」 등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장병의 기본권과 그 한계를 명시하여 권리의 제한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만 가능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달성하며, 군인의 의무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시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⁹⁾

2. 「군인복무기본법」의 주요 내용

이 법률은 제1장 총칙,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5장 병영생활,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7장 특별근무 등, 제8장 보칙 및 벌칙,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9) 국방부가 2007년 국회에 제출한 「군인복무기본법(안)」의 입법취지에서 정리한 것임.

이 법의 제정목적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 법의 적용대상은 원칙적으로 군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군인에 준하여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는 ① 사관생도·사관 후보생·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②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③ 군무원으로 하고 있다(제3조). 군무원은 군에 근무하는 민간인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있으나, 군무원의 지위는 군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내용은 평등대우의 원칙(제11조), 영내대기의 금지(제12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3조), 통신의 비밀보장(제14조), 종교생활의 보장(제15조), 대외발표와 활동의 허가(제16조), 의료권의 보장(제17조), 휴가 등의 보장(제18조)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의 기본권은 군인이라는 법적 지위로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제시하는 효과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특히, 군인의 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권리로서 법률에 명시한 것은 이 법의 의의라고 할 것이다. 다만, 군인이라는 법적 지위로 인하여 과도한 권리와 자유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한 부분 역시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군인의 의무에 관하여는 선서의 의무(제19조), 충성의 의무(제20조), 성실의 의무(제21조), 정직의 의무(제22조), 청렴의 의무(제23조), 명령발령자의 의무(제24조), 명령복종의 의무(제25조),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제26조), 군기문란 행위 등의 금지(제27조), 비밀엄수의 의무(제28조), 직무이탈 금지(제29조), 영리행위 및 겸직 금지(제30조), 집단행위의 금지(제31조), 불온표현문 소지·전파 등의 금지(제32조), 정치운동의 금지(제33조), 전쟁법 준수의 의무(제34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역시 기존의 의무사항을 입법적으로 체계화하였다는 의미가 있으며, 군인의 복무에 있어서 필요한 의무사항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병영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군인 상호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제35조), 상관의 책무에 관한 사항(제36조), 다문화 존중(제37조) 및 기본권 교육(제38조)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이 장의 내용은 변화하는 병영환경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교육 등을 의무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특히 군내부 규정으로 제시되어 있는 병 상호간의 동등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상의 관계로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이에 따른 군 내부의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입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 존중에 관한 사항은 군 복무환경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군인의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제정의 구체적인 목적 중 가장 중요한 영역에 포함되는 것이며, 실질적인 군인권보호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권리구제의 방안으로서 의견건의(제39조), 고충처리(제40조), 전문상담관(제41조), 군인권보호관(제42조), 신고의무(제43조),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제44조), 신고자 보호(제4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의견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제도 등을 법률상의 지위로 제도화하고 있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군 내부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실질적인 군인권보호제도로 도입이 추진된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법률의 제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적 불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군인복무기본법」에 관한 소고

「군인복무기본법」은 그 동안의 군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상의 논의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점에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입법의 형식면에 있어서 ‘기본법’의 입법형식이 필요한 방안이었는지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본질적으로 실체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그 실체적 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법률관계 형성의 주요 내용을 규율하는 입법이라는 점에서 기본법으로서의 입법형식에 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즉, 기본법이라는 입법형식을 취함으로써 선언적 입법의

형식을 취하면서 정책적 방향성은 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입법의 내용면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체적 관계를 규율하는 것에 부족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법의 입법형식에 관한 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외에 기본권과 의무 및 병영생활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원칙인 규정의 중복적인 규율현상은 실질적인 인권보장과 복무에 관한 구체성을 확보하는 것에 미흡한 부분이며, 실제 복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로서 규율함으로써 실질적인 복무사항의 강제성과 제재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법률의 운영을 위한 다양한 검토와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I.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입법적 불비

1. 옴부즈만 제도

「군인복무기본법」에서 법률로 제정하고자 하는 군인권보호관은 권력기구와 독립된 별도의 기구를 통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스웨덴을 비롯한 대륙법계 일부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제도¹⁰⁾는 국민고충처리를 위한 것으로 사법적 해결방안보다는 직접적이고 현장중심적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 헌법에 제도가 채택¹¹⁾된 이래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국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며, 최근에는 영국, 독일,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¹²⁾

10) 스웨덴어로 Ombudsman이란 ‘대리집행자’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즉, 사건당사자 중 일방의 의뢰를 받고 그를 대신하여 다른 일방에 대해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다(양태건,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5., 19~20면 참조).

11) 스웨덴헌법에 따라 설치된 옴부즈만은 대표적으로 사법옴부즈만(Justitieombudsman)으로 이해되고 있다.

12) 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방향 연구, 연구용역보고서, 2016., 4면.

이 옴부즈만의 본질은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제3자’에게 자신이 침해당한 권리의 구제를 구하는 것이며, ‘제3자’인 옴부즈만이 직접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근대 헌법의 기본원리에 따라 구축된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되는 제도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대국가에 있어서 최종적인 권리구제는 사법적 구제를 바탕으로 제도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권력분립의 원칙은 헌법상의 본질적 요소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권력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없는 상태인 경우, 새로운 방안 관련 제도화 요구가 나타나게 되며, 그 대표적인 것이 ‘옴부즈만’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의 운용은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며, 사법체계가 완비된 현대국가에 있어서는 더욱 제한적인 범위에서 한정된 권한만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구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¹³⁾ 첫째, 제도적 근거는 반드시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율적인 옴부즈만 - 국내에서 언론을 통하여 언급되고 있는 언론옴부즈만 -의 경우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도 그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공적 권한을 바탕으로 그 권한의 법적 근거가 필요한 공적 옴부즈만의 경우에는 반드시 헌법 혹은 법률상의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법률상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법적 기반으로 하는 옴부즈만의 창설도 가능할 것이다. 둘째, 공적 옴부즈만의 경우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옴부즈만은 본질적으로 기존의 권력견제와 균형의 축에서 벗어난 독자적이고 독립적인 조직이면서 사법유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권한남용이나 해태 등에 따른 권한의 오남용 문제에 관한 감시기능을 다양한 방법으로 마련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 중 특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통한 통제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옴부즈만은 제도의 본질상 행정부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행정부에 둘 경우 제도운

13) 양태건, 앞의 보고서, 22면 이하의 내용과 연계하여 정리한 내용임.

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옴부즈만의 권한은 사법적인 판단권한이 아니라 행정감독의 권한으로서 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법적 구제수단이 정비되어 있는 현대국가에 있어서 옴부즈만이 사법적 판단권한을 가지는 것은 헌법상의 권력분립의 본질적 기능을 부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사법적 구제 이외의 방법으로 구제수단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단순 권고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사안에 관한 옴부즈만의 의견이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위의 기준에 따라 옴부즈만은 담당기관에 따라 의회형 옴부즈만과 행정부형 옴부즈만 및 독립형 옴부즈만이 있으며, 권한에 따라서 고충처리형과 행정감시형으로 나눌 수 있다.¹⁴⁾ 옴부즈만 제도를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옴부즈만(Justicombudsman(JO))의 경우는 의회형 옴부즈만이면서 행정감시형 옴부즈만에 해당한다. 이 경우 임명 등 활동은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권고와 제도개선 및 의견표명은 물론 대상자에 대한 감찰과 처벌건의 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하여 자료제출 요구권, 협조요구권, 소추권, 징계요구권, 직권조사권, 사찰권 등 준사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¹⁵⁾

우리나라의 경우, 옴부즈만 제도에 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처리제도’를 대표적인 옴부즈만 제도로 이해하고 있다. 고충처리제도 자체를 다른 나라의 옴부즈만 제도로 이해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본질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충처리제도는 본질적으로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국민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구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기구제의 제도라는 본질적인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관계

14) 옴부즈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하동원,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1. 참조.

15) 군인권센터, 앞의 보고서, 4-5면 참조.

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방지를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대테러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는 바, 대테러분야 인권옴부즈만의 대표적인 경우이면서, 행정부형 옴부즈만의 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전형적인 행정감시형 옴부즈만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대테러인권보호관은 「테러방지법」에 따라 1명을 두며, 2년의 임기로 활동한다. 그 대표적인 권한은 ①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전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②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③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등이다. 이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두며,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할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인권옴부즈만의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직무와 권한만을 부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대테러인권보호관의 행정감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단순 민원처리에 한정된 권한이 아닌 행정참여권한과 확인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 적극적인 행정감시를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행정참여 방안은 본질적인 옴부즈만의 역할과 다르지만, 사후적 구제방안을 제도화하는 것과 더불어 사전적인 견제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할 것이다. 특히, 대테러방지활동은 테러용의자에 대한 대국민 조사 등을 비밀리에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인권침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사전에 임무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방안으로서 대테러인권보호관의 역할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2.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군인권법의 제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다루어졌다. 이 논의는 2005년 12월 당시 대통령의 군·경찰·검찰의 옴부즈

만 도입 지시에 따라 2006년에 ‘군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한 후 국방부장관 직속으로 군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하지만, 고충처리의 외부 참여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내부에 ‘군사소위원회’에서 병무·보훈관련 민원과 영내거주장병이 제기하는 군사분야 고충민원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이 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그 소속으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14년에는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위에서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내용은 조사기능과 더불어 불시 부대방문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¹⁶⁾ 이 안에 대하여는 국방부가 지휘권 보장, 군사보안, 실효성 있는 구제 등의 측면을 감안하여 국방부 설치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 논의가 있었으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하였다.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과정에 있어서도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은 제도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에서 부터, 임의설립과 의무설립의 의견이 많은 논쟁과정을 거치면서 의무설립에는 합의에 이르렀지만, 그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그 실체가 여전히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고 할 것이다. 즉,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에 관하여는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조직, 업무, 운영방안 등에 관하여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군인권보호관 제도 관련 논의과정

- 2014년 7월 윤일병 구타사망 사건 발생
- 2014년 8월 장관 대국민 사과(민관군 병영혁신위 가동해 전군 차원 개선책 도출)
- 2014년 8월-12월 민관군 병영혁신위 활동
 - 국무총리실 직속 국민권익위 내 국방인권 옴부즈맨 설치 권고
- 2014년 11월-2015년 7월 국회 군인권 및 병영문화혁신특별위원회 활동
 - 국가인권위에 국방 옴부즈맨 설치 권고

16)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 1명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인권위 산하에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임(「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영청 등 27인 2015년 7월 30일 발의)

- 2015년 8월 국방부 ‘부동의’ 의견 제출
 - 안보분야 새로운 제도 도입 신중 필요
 - 설치시 국방부 내 설치 주장(지휘권의 보장)
- 2017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 군인권보호관 설치 의무규정 제정
 -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도록 의무화
- 20대 국회 관련 입법안 제출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 발의) : 국방부 소속 독립 지위 부여, 국회 상임위 추천과 대통령이 임명, 조사·감독권 부여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의원 대표 발의) :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사무처에 준하는 기관으로 설치, 조사 및 수사참여권 보장 등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3장 입법평가

- I.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 II. 비교제도론적 평가

제3장

입법평가

I.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1.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군인권보호관의 제도화는 어디에 설치하는가에 관한 논의를 그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 군인권이라는 특성과 인권보호라는 측면은 물론 보호의 실효성이라는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점에서 관련 논의의 진전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각각의 관점에 따라 ①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방안, ②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방안,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와 달리 국방부에 설치하는 방안과 독립기구를 두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국방부에 두는 방안의 경우에도 이를 사법기구화할 것인지, 장관 소속의 독립기구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으며, 독립기구화방안은 그 소속기관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하여야 할 사항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1)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방안

이 안의 대표적인 방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¹⁷⁾이 있다.¹⁸⁾ 이 법안에서는 국민의 인권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소속의 독립적인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두어 행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담당할

17) 2007년 1월 20일 국회 제출

18) 이 법안 이전에 2015년 3월 3일에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군인권보호원법(안)」이 있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군인의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기구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이유를 “우리나라 군의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에 막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한”¹⁹⁾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비교법적 관점에 있어서 독일의 군사음부즈만 제도와 영국의 군음부즈만 제도를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군인은 특수계급이 아닌 ‘제복입은 시민’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통제를 받는 것이 적절하며, 인권문제는 군 존재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국회가 그 통제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 방안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인기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군인권침해행위의 방지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²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 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갖도록 하였다.²¹⁾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군 관련 인권침해에 관한 대처가 기관의 권한과 활동 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즉, 국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에 둬으로써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입법정책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

19)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인용.

20) 국회 제출 법안 주요 내용 중에서 인용.

21) 국회 제출 법안 주요 내용 중에서 인용.

한, 권한에 있어서도 조사 등 광범위한 실효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임명되는 군인권보호관의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와 군인권 보호의 실효성이라는 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와는 별개로 국회는 모든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점에서 특정 기관 내부의 인권문제에 관하여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을 적절하지 않으며, 포괄적인 인권보호에 청원과 입법 등을 다룰 수 있는 독립기구의 설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군인권보호에 한정된 기구가 아니라 “국민인권보호관” 혹은 “국민청원옴부즈만”을 두어 각 분야별 인권문제는 물론 국회에 제안되는 청원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한 있는 중립기구의 설치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방안

군인권보호관을 외부의 독립기구에 두는 경우, 국가인권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독립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은 많은 의견이 개진된 바 있다. 이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별도의 군인권을 담당하는 분야를 두고, 군인권 담당자를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²²⁾ 즉,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 옴부즈만을 설치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²³⁾ 첫째, 인권위는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모든 사항을 다루는 인권전담 기구로서 입법·사법·행정으로부터 독립하여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국가기관이라는 점이다. 즉, 인권위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전담기구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구제기능,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기능, 인권에 관한 포괄적 정책

22) 2015년 7월 30일에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 있음.

23) 아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 12월 11일의 내용을 정리한 것임.

을 연구하고 권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폭행·가혹행위, 차별행위 등은 모두 인권에 관한 문제로 인권전문기관인 인권위가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인권위 직제령(대통령령)에는 군 사건의 조사·구제, 직권조사, 정책권고 등을 규정(제9조제3항)하고 있다.

둘째, ombudsman의 기능은 인권위의 주요 기능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미 활동 중인 상태라는 점이다. 즉, 인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 군인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진정사건조사, 직권조사, 군 영창 및 교정시설 방문조사, 권고권을 행사하고 있는 등 그 권한과 기능이 독일의 국방감독관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미 ombudsman 제도의 본래목적인 인권보호와 국가권력의 감시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정착에 수월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권위는 오랜 기간 축적한 군 인권에 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인권위는 설립 후부터 2014. 10. 31.까지 13년간 군 인권 문제에 관하여 총 1,490건의 다양한 진정사건이 접수하였으며, 2011년 이후 연 평균 진정접수가 160여 건에 이르고 있는 등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직권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발생→인권위 조사→병영혁신 노력으로 이어지는 단초를 마련하였으며, 우리 사회 군 인권 문제에 관한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2005년 훈련소 인분사건, 2010년 해병대 기수열외 등 폭행 가혹행위, 2011년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 등을 조사하였다. 인권위는 진정사건, 직권조사 외에도 군 인권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군 인권정책을 제시했고, 군 인권교육도 실시해 왔으며, 2012년의 인권친화적 병영문화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 권고, 2013년의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개선 정책권고, 2013년 여군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3년 군 영창관련 정책권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 인권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에서 그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인권위는 위원회 내에 별도의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인이 담당하도록 하며, 사무처에 군인권본부를 두어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조사와 진정 등에 관

한 사항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부대방문조사 등 추가적으로 군사적인 부분의 보완사항을 입법사항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조사 또는 진정 사건과 다른 요건과 절차를 마련할 부분에 대하여 입법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기구로서 인권에 관한 조사와 진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군인권의 문제에 관하여도 적절한 조치와 활동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별도의 추가적인 조직구성이나 업무교육 등이 불필요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제도적 방안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에 있어서 군인권의 분야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며, 실제 군 관련 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사건 등은 직접 다루고 있고, 사건 접수는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이에 따른 구제조치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는 현재의 인권보호 제도와 기구로는 실효성 있는 군인권보호가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위원회의 권한과 활동의 부분적인 확대에 이러한 실효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본질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 등을 보다 실효성 있는 권한으로 확대개편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3)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방안

현재 권익위에는 제4소위원회(3인)에서 국방음부즈만 형태의 국방 관련 고충민원 처리 업무 담당 부서가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 민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안의 변경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민원이라는 보다 폭 넓은 군생활전반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에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는 것보다는 실효성이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민원처리에 따른 법률상의 효과 등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보호의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에 의문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권익위에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경우, 담당 업무의 영역을 민원부분과 인권부분으로 나누고,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현행의 법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지만, 인권부분에 있어서는 조사 및 진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권익위의 분석²⁴⁾에 따르면 군 인권보호관이 인권침해 사건에 국한될 경우 군인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즉, 군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복무 중의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은 물론 입대 전 병무고충, 입대 후 병영생활 고충, 전역 후 보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요청되고 있으므로 군 옴부즈만은 이러한 다양한 요청을 종합적인 고충민원으로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아울러 인권위의 경우 그 조사 대상의 제한성과 함께 조사기간의 제한 등으로 군 의문사 등과 같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사건 처리 등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있다. 실질적으로 인권위의 경우 인권침해 발생 후 1년 이내의 사건을 위주로 조사 사건만을 다루는 한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바, 권익위의 경우 연평균 1,968건을 처리기간의 제한 없이 처리하고 있지만, 인권위는 연평균 107건을 처리기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처리하고 있는 현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군인권보호관을 권익위에 둘 경우, 군 장병 고충·인권에 대한 선제 대응 및 예방이 가능하며, 군부대 실태조사를 통한 체계적·입체적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축적된 국방옴부즈만 운영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군 관련 사건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 권익위는 2006년 12월 국방옴부즈만 도입 이후 군사, 국방, 보훈, 방산 등 국방 전반에 대한 고충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국방보훈민원과 조사관 대부분이 육·해·공군 등 군 관련 경력자가 많이 있다는 점에서 그 강점을 포함하고 있다.

24) 국민권익위원회, 「국방 옴부즈만」 기능강화 필요성, 국회 설명자료, 2015.4.2. 참조.

(4) 국방부 소속으로 두는 방안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목적은 군인권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경우 직접적인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군인권 보호의 실효성이라는 측면이 오히려 내부자로서의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제도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기관의 설치에 대하여 소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거치고 있다.

국방부 소속 군인권보호관의 설치에 그 전제로서 군 혹은 국방부와 관계없는 제3자가 임명되어야 하며, 임명절차 등에 있어서 국방부장관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속기구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독립성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필요적 요건이라고 할 것이다.

국방부 소속으로 할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직접적인 조사와 실효성 있는 개선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소속기관의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조치 등으로 인권보호의 실효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이미 국방부장관 등 군내부적인 권한 관계에 있어서 조치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 조치의 한계로 군인권보호관을 별도의 기관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제도의 본질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즉, 군의 인권에 관한 대국민 신뢰성의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방부 소속의 기관운영에 대한 대국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군사법기관의 역할은 그 권한과 제도적 취지 등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군사법기관 내부 혹은 독립기구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방안은 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할 수는 있지만, 고려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물론, 군사법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한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면 제도도입 자체에 관한 논의를 새롭게 전개하는 방향의 논의는 일견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5)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두는 방안

군인권 보호의 특성상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기존의 기구에 관련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지만, 각 기관별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인권보호관은 독립행정청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보호처’와 같은 독립된 행정청을 두고 산하에 각 군별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기구를 두어 운영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권한에 있어서도 조사와 진정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고, 관련 행정기관간의 업무진행에 관한 협조와 대국회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군이 가지는 특수성 등을 감안하고, 모병제가 가지는 대국민 인식 등에 기반할 때, 보다 적극적인 조직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인권보호 수단과 기구가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기구 설립의 효용성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며, 별도의 기구를 두는 것이 인권보호의 실질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의 대국민 인식전환과 효율성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고 할 것이다.

2. 권한에 따른 평가

(1) 직무의 내용

군인권보호관의 권한 내용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군인복무기본법」상의 기본권과 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병영생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 권한의 내용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의 관할 법률은 「군인복무기본법」이며, 그 권한의 범위 역시 이 법률에 따른 권한을 포괄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군인권보호관의 직무는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른 군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실태조사, 군인권보호지침의 제시 및 권고 등을 기본적인 직무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담당기관에 따라 각각의 개별적인 직무사항을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개별 기관의 업무에 한정된 직무가 아닌 관련 인권기관과의 연계와 협조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중장기적인 군 관련 인권보고서와 인권 관련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권침해 사항은 단순한 생명과 신체에 관한 위협뿐만 아니라 생활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고충에서부터 군 업무에 대한 불법·위법 사항을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군인권보호관에게 진정 혹은 직권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사후적 조치

군인권보호관에게 적극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관련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당사자에 대한 권리구제라는 사후적 조치를 통한 원상회복을 위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조사 이후의 구제절차 등을 입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즉, 관련 기관에 사건을 이송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도 조치사항의 보고와 검토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등 사법당국에서 처리할 사안은 신속하게 수사개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입법적 근거와 기준 등을 법률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군이라는 조직의 특수성으로 조사 등에 있어서 현장방문 등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한을 명시하고, 국가안보와 개인의 인권보호를 비교형량하여 법령상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을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사항 등도 법령에 반영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I. 비교제도론적 평가

1. 영국

과거 영국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군사법원은 상설적이라기 보다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집되는 회의체의 성격이 강했었다. 그러나 2006년 국군법(Armed Forces Act 2006)에 따라 상설법원으로서의 법적지위를 가졌지만 유럽연합에 가입하면서 군사법원을 폐지시켰었다. 그런데 유럽연합에서 탈퇴한 현재, 영국에서 군사법원제도를 어떻게 변경,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구나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과거 영국의 군사법원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보고서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영국의 군인권 옴부즈맨 제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1) 영국의 군 사법제도의 특징

(가) 사법제도에 관한 통합법의 부재로 인한 다중적 재판관할

영국은 전 군에 적용되는 통합군사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육군, 공군, 해군 별로 각각 고유의 징계법이 적용되며, 각 군 당국(service authorities)은 군에 복무하는 자가 본국 또는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각 군 당국은 공무 중이든 그렇지 않든 군복무자가 범한 모든 범죄에 대해 재판할 수 있지만, 민간인에 대한 살인, 과실치사, 강간 등과 같은 중대한 범죄를 영국 내에서 범했을 경우에는 일반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상기한 중대한 범죄라해도 해외에서 발생했다면 여전히 군 당국이 관할권을 가진다.²⁵⁾

또한 통합 군사법의 부재로 인해서 육군과 공군에는 지역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이 라는 두 종류의 군사법원을 두고 있는데, 사건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계급, 즉 피고인이

25)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군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02, 353-357면.

병사 및 부사관인 경우에는 소령이나 중령 3인과 배석판사로 구성되는 지역군사법원이 중대한 범죄나 피고인이 장교이상인 경우에는 대령이나 준장을 포함하는 5인과 배석판사로 구성되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하게 된다.²⁶⁾ 반면 해군에서는 보통군사법원 하나만 존재한다. 이는 해군의 경우, 지휘관에게 타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약식처벌권²⁷⁾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며 중한 죄를 범했거나 장교를 재판하는 경우에 한해서 보통군사법원이 소집된다.

(나) 비법률가들에 의한 군사법원 구성

영국 군 사법제도 중 특징적인 부분은 군사법원의 구성이 반드시 법률가들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군복무 중에 법률 관련 직업교육을 받았다면 실령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장교라고 해도 군사법원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⁸⁾ 물론 중대하고 복잡한 범죄 사건이라면 법무감실의 군법무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법무관은 재판진행과정을 조언하는 것이지 재판 자체를 주도하거나 형을 선고하는 재판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 지휘관²⁹⁾의 확인조치권

영국의 군 사법제도는 많은 부분에서 미국과 유사한 제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이 영국의 군 사법제도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절차에 있어서 광범위한 권한을 지휘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점이었다. 그러나 유럽인권협약의 비준과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휘관의 권한이 많이 축소되면서, 군인에 의한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관은 이를 조사한 뒤에 군사법원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판단되면

26)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62면. 배석판사는 법률가로서의 자격이 있는 민간인 중에서 대법관이 임명한 자로서 군사법원의 전반적인 재판진행을 보조하며, 법적 문제에 대해서만 독자적으로 결정한다. 군인은 군사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민간법원과 상원에 항소할 수 있다.

27) 약식처벌의 종류에는 구류, 벌금, 견책, 특권제한 등이 있는데, 영국 육군과 공군에서는 최장 28일 범위 내의 구류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데 반해, 해군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약식절차로 처리할 수 있고, 구류처분도 3개월까지이다.

28) 김이수, 한국 군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4면.

2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61면. 확인장교라고도 하는데,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확인(승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가진다.

일반적으로 상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지게 되었고, 상급 지휘관의 판단에 따라 군 소추기관(The Army Prosecuting Authority)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된다. 즉 과거에는 지휘관이 군사법원의 소집권자였는데 현재는 군 소추기관이라는 독립기관이 이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휘관은 군 사법절차에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지역군사법원에서든 보통군사법원에서든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형이 선고되면 해당 지휘관은 그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확인조치가 있어야지만 판결과 형 선고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³⁰⁾ 달리 말하면 재판절차의 전반에 걸쳐 법적인 하자나 오류가 있다면 지휘관은 확인조치를 보류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심을 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설령 군사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도 지휘관의 확인조치권이 행사되기 전까지 효력 발생이 보류되는 것이다.³¹⁾

(2) 영국 군 사법제도의 내용

(가) 영국 군사법의 형성

군주제 국가인 영국의 특성에 따라 군 사법제도와 관련 있는 절차나 규칙은 왕실에서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각 군별로 세부적인 규칙 역시 왕실규정으로 정해져 있다. 과거 영국에서 군법전은 전쟁상황시 적용되는 전시군법전(Articles of War)과 평시에 적용되는 군사반란처벌법(Mutiny Act)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전시군법전(British Articles of War)이 1774년에 시행되었고 여기에 따르면 각 지휘관은 전쟁 중, 병사에 대한 모든 처벌권을 국왕으로부터 위임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영국에는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전 군에 적용되는 통합 군사법전은 없다.³²⁾ 다만 1955년에는 육군법과 공군법이, 1957년에는 해군훈련법이 제정되었고 각 법률들은 1961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³³⁾ 그리고 각 군별 위원회령에 따라 각 법률의 내용이 개정될 수 있지만 의회의

30) 박성현,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할관, 심판관제도를 중심으로 -,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69면.

31) 안보경영연구원, 군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0, 67-68면.

32) 허재석,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20-24면.

33) 박성현, 앞의 논문, 41면.

승인을 얻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5년마다 의회로부터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규정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군사법의 적용대상은 각 군의 군인들이 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관련 민간인들도 관할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영국 육군법 부속 별표 제5항에 따르면, 영국정부에 고용된 사람이나, 영국군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군의 작전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직업, 또는 사업상의 이유로 영국군과 함께 할 권한이 있는 사람 등도 해당된다.³⁴⁾ 이들은 군사법의 적용을 받으며 범죄사건이 발생할 때에는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군사법원의 재판관할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³⁵⁾

(나) 영국의 군 사법절차

영국에서 군 사법권이 행사되는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약식절차를 통한 재판과 정식 군사법원에서의 재판절차이다. 그리고 각 군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군사법원은 다시 지역군사법원과 보통군사법원으로 나누어 관할권을 가진다. 제1심 이후 당연히 항소나 상고가 허용되는 군항소법원(Courts-Martial Appeal Court)은 민간법원이며, 상고심은 의회의 상원인 귀족원(House of Lord)이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 상고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영국 군 사법역사에서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

1) 약식재판절차(Summary trial)

약식재판절차는 민간인에 대한 범죄이든, 군내에서의 범죄이든 관계없고 범죄자의 계급에도 관계없이 경미한 범죄를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로서 보통 지휘관에게 처리권한이 주어져 있다. 약식재판절차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경미한 범죄라는 것은 결근, 명령에 대한 합법적인 불복종, 열병식을 포함하는 근무시간의 지각 등 군복무자들이 범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사항 등이 포함되며 가벼운 폭행과 중독성 없는 마약의 소량 소지 등의 경우에도 약식재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마약소지의 경우에는 파면이라

34)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175면.

35) 박성현, 앞의 논문, 42-43면.

는 행정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일반 병이나 하사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우선 지휘관에 의해 사건이 처리되는데, 해당 지휘관은 해당자를 최장 60일의 범위 내에서 구금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계급을 강등시킬 수도 있고 최대 28일간의 보수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범죄자가 준위 또는 중령 이하의 장교일 때에는 보통 준장에 의해 사건이 처리된다. 한편 해군의 경우에는 약식재판절차에 있어서 지휘관에게 육군이나 공군보다 더 광범위한 권한이 주어진다. 이는 해안 기지나 항해 중인 함정의 사령관은 군복무형태의 특성상 신속하고 간이한 형사절차의 처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약식재판절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해군의 지휘관은 해당자를 최장 90일의 범위 내에서 구금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고용관계를 해소할 수도 있다.

2) 지역군사법원

약식재판절차에서 다루기 어려운 보다 중대한 범죄들은 군사법원의 관할이다. 그 중에서 지역군사법원은 소령이나 중령을 의장으로 최소한 3인의 장교로 구성되는데, 특이한 것은 이들 모두 반드시 법률적인 자격을 갖출 필요는 없다는 것이고, 보통법(common law)재판과정에서 배심원단의 역할처럼 법률적인 문제보다는 사실문제에 대해 판단한다. 다만 영국의 수석판사인 대법관이 임명한 민간 법률가가 각각의 사건에서 판사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군사법원절차 전반을 지도, 보조하며 법률문제를 결정한다. 지역군사법원은 최대 2년 이하의 금고형만을 선고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장교인 경우에는 관할권이 없고, 만약 피고인이 장교라면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권이 넘어 간다. 한편 해군의 경우에는 지역군사법원은 없고 약식재판절차와 보통군사법원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해안 기지나 항해 중인 함정에 주둔해야 하는 해군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3) 보통군사법원

군 소추기관은 지역군사법원에서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중대한 범죄 혐의 사건이 발생했거나 피고인의 계급에 따라 보통군사법원을 소집할 수 있다.³⁶⁾ 보통군사법원의 구성은 대령이상의 장교 5인과 배석판사로 구성되며 군법 및 일반법을 위반한

36)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180-182면.

범죄에 대해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으며 일반 민간법원의 절차와 규정이 거의 동일하게 적용된다.³⁷⁾

(3) 영국의 군 인권 옴부즈맨제도

(가) 군 인권 옴부즈맨제도(Service Complaints Ombudsman)의 도입

영국에서 1995년부터 2002년까지 동일한 부대에서 4인의 병사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조사결과 부대 내에서 구타, 가혹행위 및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있었고 견딜 수 없었던 병사들이 모두 자살하게 된 것으로 판명되었다.³⁸⁾ 동일한 부대 내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범죄행위가 발생했고 그 결과 병사들이 자살하게 된 사건은 큰 충격이었고 이를 계기로 군복무 전반에서 만연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다.³⁹⁾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국은 2006년 국군법(Armed Forces Act 2006)을 제정하게 되었고 여기에서 국방부에 소속되지만 엄격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가지는 군복무고충처리관(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제도를 도입하였다.⁴⁰⁾ 이후 2015년에 이를 개정한 국군(복무고충신고 및 재정지원)법(Armed Forces(Service Complaints and Financial Assistance) Act 2015)에서 군 인권 옴부즈맨 제도로 변경되었고, 2016년에는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재확인하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영

37)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353-354면.

3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59면.

39) 군인권보호관 법제의 도입,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회),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16.11.1면.

40) 군 고충처리 감찰관 제도라고도 하는데, Armed Forces Act 2006, 제366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 (1) There shall be a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 (2) The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is to be appoin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 (3) A person may not be appointed as the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if he is—
 - (a) a member of the regular or reserve forces; or
 - (b) a person employed in the civil service of the State.
- (4) The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shall hold and vacate office in accordance with the terms of his appointment.
- (5) The Service Complaints Commissioner is not to be regarded—
 - (a) as the servant or agent of the Crown; or
 - (b) as enjoying any status, immunity or privilege of the Crown.”

국군대에까지 확대하는 개정을 하였다.⁴¹⁾ 영국의 군 옴부즈맨 제도는 독일의 국방감독관 제도와의 유사한 목적 및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의회의 통제를 받는 독일과는 달리 국방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나) 군 인권 옴부즈맨의 역할과 임명

영국의 군 인권 옴부즈맨은 국방장관의 추천으로 여왕이 임명하게 되는데, 군인이나 군무원인 자는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⁴²⁾ 즉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지위에서 군 내의 인권상황을 감시하고 침해사건 발생 시 이를 처리하기 위해 순수한 민간인으로 구성하며 폭력행사, 성적인 추행 및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등과 같이 영국군 내에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Unacceptable behavior)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고충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⁴³⁾ 이들은 고충신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고충신고에 대한 수사의 시작과 범위의 결정 및 계속수사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⁴⁴⁾ 임명된 옴부즈맨의 임기는 3년이며 1회에 한해서 재임할 수 있다. 영국의 군 인권 옴부즈맨 당국은 연간보고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⁴⁵⁾

(다) 군 인권 옴부즈맨제도에서 고충처리절차

영국군에 복무하는 군인, 군무원 등 모든 군복무자뿐 아니라 그들의 고충을 알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 등도 군 인권 옴부즈맨에게 고충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방법은 서면으로 할 수도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접수할 수도 있다.⁴⁶⁾ 고충처리 신청서에는 다음의

41) Armed Forces Act 2016.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6/21/contents>,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42) Armed Forces(Service Complaints and Financial Assistance) Act 2015 제365B조 제2항 및 제3항, 원문은 다음과 같다. “(2) The Ombudsman is to be appointed by Her Majest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Secretary of State.

(3) A person may not be appointed as the Ombudsman if the person is –

(a) a member of the regular or reserve forces, or

(b) employed in the civil service of the State.”

43) Armed Forces Act 2006 제366조.

44) Armed Forces(Service Complaints and Financial Assistance) Act 2015 제340I조.

45) <https://servicecomplaintsombudsman.govsite.com/wp-content/uploads/sites/8/2016/02/OSCO-Annual-Report-2016.pdf>,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46)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service-complaints-process#making-a-service-complaint>,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⁴⁷⁾

① 고충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② 고충해당자의 계급, 군, 군번, 군부대 ③ 고충사유 ④ 발생 장소 및 시간 ⑤ 가해자 및 관련자 ⑥ 고충신고에 대한 이유 및 희망하는 해결결과 ⑦ 직속상관 또는 부대장에 대한 고충신고 및 내용보고 여부

그리고 일반적 고충(All Complaints)의 경우와 폭력행사, 성적 추행, 차별 및 부당대우와 같은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한 고충의 경우, 각각 처리절차가 약간 다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 고충처리⁴⁸⁾

진행단계	세부내용
1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권 ombuds맨은 신청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고충신청자의 직속상관에게 알려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 함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고접수 후 5일 안에 통보해야 하며 신청자에게도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함 • 만약 신청된 고충의 원인이 직속상관이거나 관여되어 있는 경우, 부대장에게 직접 통보해야 함
3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인권 ombuds맨으로부터 고충사실을 통보받은 직속상관 또는 부대장은 신청자를 면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음
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후, 통보받은 직속상관 또는 부대장이 고충처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는 군 인권 ombuds맨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 경우 군 인권 ombuds맨은 직접 국방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고 군 고충위원이 이를 해결하게 됨
5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담 후, 통보받은 직속상관 또는 부대장은 고충해결 결과에 대해 군 인권 ombuds맨에게 보고하고 신청자에게도 내용을 공개함 • 만약 결과가 신청자의 경험과 상이한 경우에는 상급 부대로 회부되어 다시 절차가 진행됨

47)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60면. <http://armedforcescomplaints.independent.gov.uk/howtocomplain.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4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60면 <표 2-4>를 재편집함.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service-complaints-process#making-a-service-complaint>,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2)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인한 고충처리⁴⁹⁾

진행단계	세부내용
1단계	• 군 인권 ombuds맨은 신청자의 의사를 바탕으로 하되 사안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고충신청자의 직속상관에게 알려야 하는지의 여부를 결정 함
2단계	• 알리기로 결정하는 경우, 신고접수 후 5일 안에 통보해야 하며 신청자에게도 통보한 사실을 알려야 함 • 만약 신청된 고충의 원인이 직속상관이거나 관여되어 있는 경우, 부대장에게 직접 통보해야 함
3단계	• 군 인권 ombuds맨으로부터 고충사실을 통보받은 직속상관 또는 부대장은 신청자를 면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 받음
4단계	• 통보받은 직속상관 또는 부대장은 신청된 사안이 일반적 고충인지의 여부를 군 인권 ombuds맨에게 통보해야 함(15일 안) • 만약 신청자가 일반적 고충사안이 아니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속상관 또는 부대장이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군 인권 ombuds맨에게 직접 알려야 함
5단계	• 통보받은 직속상관 또는 부대장은 면담한 고충 사안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진행사항을 신청자와 군 인권 ombuds맨에게 매 30일마다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
6단계	• 신청자와 군 인권 ombuds맨은 신청된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받음
7단계	• 통보받은 고충처리결과에 불만족할 경우 이에 대해 상급기관 등에 재청구할 수 있음

2. 독일

독일기본법 제46b조는 “기본권을 보호하고 의회의 견제기능을 보완하는 의회의 보조기구”로서 연방의회에 국방ombuds맨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⁰⁾ 이러한 기본법의 근거를 바탕으로 군사ombuds맨법인 「독일연방의회 국방위원회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en

4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61면 <표 2-5>를 재편집함.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service-complaints-process#making-a-service-complaint>,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50) 1956년 3월 16일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반영

Wehrbeauftragten des Deutschen Bundestages : WBeauftrG)이 연방의회에서 제정되었다.⁵¹⁾

즉, 독일의 군사옴부즈만은 연방의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방의회에 대하여 보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다.⁵²⁾ 군사옴부즈만은 의회에서 다수결로 선출되며,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와 연방의회의 교섭단체는 추천권을 가진다. 임기는 5년이며, 35세 이상의 독일인이면 누구나 선출될 수 있다. 군사옴부즈만의 중요한 권한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와 동시에 군의 내부적 지휘원칙이 지켜지고 있는 지를 감독하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어진 군인에게 주어진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권리는 청원권이다. 즉, 독일의 모든 군인은 이 법률에 따라 군의 내부적 지휘체통을 거치지 않고 직접 국방옴부즈만에게 청원할 수 있다. 그 청원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군내 생활의 모든 분야의 고충과 불만까지 청원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청원하는 것은 물론 이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된 모든 사람의 대리청원도 인정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청원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복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허위 사실이나 비방목적의 청원권은 보호받지 못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청원의 남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군사옴부즈만은 이러한 청원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하여 극비문서를 제외한 모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관계 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자에 대한 직접 조사 및 방문조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방문조사의 경우에도, 방문조사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모든 군인들을 직접 면담 등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확인된 사실은 즉시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할 수 있으며, 군 내부의 징계권 행사 실태에 대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⁵³⁾ 또한, 형사소송 및 징계법원상의 절차에 참관인으

51) 1957년 6월 27일 발효

52) 문성호, 옴부즈맨과 인권, 한국학술정보, 2007., 280면.

53) 문병호, 앞의 책, 280면.

로 참여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에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⁵⁴⁾ 물론 이러한 군사옴부즈만의 권고는 행정기관에 관한 직접적인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 소속의 기관이라는 점과 군사옴부즈만이 가지는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군 내부의 지휘관 등 관련 기관이 이 권고를 준수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발휘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3. 미국

(1) 군 사법제도 형성과정

미국의 군 사법제도는 영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독립전쟁시기에 미국의 지휘관들은 영국에서 1774년 제정된 전시군법(British Articles of War) 및 제도를 참고하게 되는데, 1775년 4월 메사추세츠 주는 임시의회를 열어 영국 전시군법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메사추세츠 군법(Massachusetts Articles of War)을 제정하였고 이것이 최초의 미국 군사법이라 할 수 있다.⁵⁵⁾ 이후 코네티컷주, 로드아일랜드주, 햄프셔주, 펜실베이니아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등에서도 유사한 군법을 제정하였고 1775년 6월 개최된 미국 대륙의회에서 미국 육군에 적용할 군법 제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 뒤, 이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1775년 6월 30일 69개 조문으로 구성된 연방차원의 군법전(American Articles of War)을 제정하게 된다.⁵⁶⁾ 여기에 따르면 미국의 초창기 군사법원은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s-Martial), 연대군사법원(Regimental Courts-Martial), 주둔군

54) 문병호, 앞의 책, 280면.

55) 지대남, 미국의 군사법제도에 있어서 지휘관의 권한, 공법학연구, 제12권제1호 (2011), 233면: 일례로 메사추세츠 군법에서는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s-Martial)을 13인 이상의 장교로 구성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영국의 군사판관처법(1689년)이 군사법원 배심원의 수를 13인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을 참고한 것이라고 본다.

56) 위원회 위원이었던 애덤스와 제퍼슨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영국의 군법을 모델로 하자는 내용이 있는데, 주요한 내용은 ‘인류사에서 현존하는 위대한 군법체계는 대제국을 융성하게 했던 로마제국과 대영제국의 것이며, 이것 이외에 새로운 것을 고안해 낸다는 것은 헛된 것이며 대영제국이 로마제국의 군법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처럼 미국도 영국의 군법전을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다’ 라는 것이었다. in: Frederick Bemays Wiener 『American Military Law in the light of the first Mutiny Act's Tricentennial』, Military Law Review, Vol. 126, 1989, p.5: 지대남, 위의 논문, 234면 각주 4에서 재인용.

군사법원(Garrison Courts-Martial)이 있었는데, 1916년 개정을 통해서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s-Martial), 특별군사법원(Special Courts-Martial)과 약식군사법원(Summary Courts-Martial)로 변경하게 된다. 이후 1950년 5월 5일 미국 연방헌법 규정에 따라 법률제정권을 가진 연방의회가 통합군사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이하 UCMJ)⁵⁷⁾과 군사법원 교범(Manual for Courts-Martial, 이하 MCM)⁵⁸⁾을 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미국 군 사법제도의 특징

1) 지휘관의 광범위한 결정권

미국 군 사법제도의 특징은 지휘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인데, 지휘관은 사건이 발생하면 형사절차를 개시하는 것부터, 수사과정을 거쳐 군사법원에 회부할지의 여부, 재판부의 구성, 판결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확인조치권 등 군 사법절차의 거의 모든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일반 형사사건과는 달리 미국의 군 사법절차는 검사역할을 하는 법무관과 피고인의 대립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다는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군 사법절차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지휘관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⁵⁹⁾ 먼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헌병 조사계인 MPI(Military Police Investigation)와 전문 범죄수사기관인 CID(Criminal Investigation Department)가 초동 수사를 하고⁶⁰⁾ 그 결과를 지휘관⁶¹⁾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⁶²⁾ 보고를 받은 지휘관은

57)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군사법제도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고, 많은 국가들이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였지만, UCMJ에 따르면 미국은 과거 군사법원의 전통적인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군사법을 제정하였다.

58) 군사법원 교범(MCM)은 UCMJ의 시행령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59) 미국의 군 사법절차 전반에서 지휘관의 권한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대남, 앞의 논문, 237-254면을 참조.

60) CID(Criminal Investigation Division)는 미 육군 범죄수사 사령부(H. Q. United States Army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USACIDC) 소속의 각 지부인데, 각 군별로 명칭이 조금 상이하다. 즉 해군의 전문수사관은 NCIS(U.S. Naval Criminal Investigative Service), 공군은 AFOSI(U.S. Air Force Office of Special Investigation)라고 한다. 이들 모두 각 군의 헌병대와는 독립되어 있으며 별도의 지휘계통에 따라 각 군의 중범죄를 수사한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구성과 운영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2003, 282면 각주 4 재인용.

61)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보고서(2003), 280면, Immediate Commander, 통상은 Company Commander가 되는데, 중대장이라고 볼 수 있다.

62) 국가인권위원회,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318면, 대개의 사건은 헌병이 초동수사를

보충수사를 명령하거나, 비사법적 처벌(Non Judicial Punishment) 또는 행정징계(Administrative Action)로 사건을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법원에 회부해서 정식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이후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지휘관은 판결에 대한 확인조치권을 행사함으로써 판결의 확정과 효력발생을 결정한다. 물론 이렇게 지휘관에게 많은 권한이 주어짐으로 해서 수사와 재판과정 및 결과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는 우려도 있지만, 이후 살펴 볼 통합군사법전(UCMJ) § 837. Art. 37은 “군사법원의 소집관이나 지휘관은 군판사, 변호인, 배심원 등 군사법원의 구성원에 대해 판결 또는 기타 재판절차상의 역할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해서 ‘재판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군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⁶³⁾

2) 피고인의 권리

미국 군에서 사건의 피고인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보다 두터운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미국 통합군사법전(UCMJ) § 831. Art. 31은 진술거부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피고인은 심문이 시작되기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기소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데 이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보다 더 앞선 절차에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피고인에 대해 그들이 원한다면 군 변호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재판유형을 군판사만의 단독심으로 할지, 군배심제로 진행할지를 선택할 권리도 가진다.⁶⁴⁾

또 통합군사법전(UCMJ) § 832. Art. 32는 피고인이 심문 및 조사과정에 출석할 권리와 군 변호사 또는 일반 변호사에 의해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유죄답변거부를 위해 심문을 포기할 권리도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반 형사사건의 심문

하고, 중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수사기관이 수사하며 군검찰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63) UCMJ § 837. Art. 37 (Unlawfully influencing action of court).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64) UCMJ § 831. Art. 31 (COMPULSORY SELF-INCRIMINATION PROHIBITED).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및 조사과정과는 달리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해 증인을 소환하고 질문할 수 있으며, 증거를 제시할 수도 있다.⁶⁵⁾

3) 비상설 군사법원

미국의 군사법원은 연방헌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법제도 상의 법원과는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 통합군사법전(UCMJ)에 따르면, 상황발생시 군사법원의 소집권자는 각 군의 법무국에 소속되어 있는 법무관들 중에서 판사, 검찰관, 변호인 등을 선임하여 해당 사건을 심리하기 위한 군사법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RCM)⁶⁶⁾, 이렇게 보면 미국의 군사법원은 비상설적이며 오히려 군법회의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즉 미국의 군사법원제도는 평소에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소집권자의 명령에 의해서 비로소 설치되는 비상설적인 재판기구라고 할 수 있다.

4) 군배심원제도

미국의 군사법제도는 재판유형과 관련하여,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마찬가지로 배심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군배심원은 일반적으로 장교와 선임하사관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은 일반 재판에서의 배심원과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 즉 사실의 판단과 증거의 인정, 유죄의 판단 및 형량의 결정에 관여하게 된다. 다만 최고형이 사형인 범죄에 대해서 유죄평결을 내릴 때는 전체 배심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해야지만 가능하고 형량을 사형으로 선고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군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는 재판의 심리와 진행 및 배심원들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배심원들이 실제적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기여한다.⁶⁷⁾

65) UCMJ § 832. Art. 32 (INVESTIGATION).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66) 'Rules for Court-Martial'의 약자로 군사법원교범(MCM)의 Part 2이다.

67) 박성현, 앞의 논문, 34면.

(3) 미국 군 사법제도의 중립성 및 독립성

미국 군사법원의 독립성 확보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문제이다. 군 사법절차 전반에 지휘관의 권한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대신, 일단 지휘관이 군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있다면 재판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전문수사기관인 CID에 대한 지휘관의 영향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다.⁶⁸⁾ 또 군사법원 구성에서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군판사, 변호인, 군검찰의 조직은 엄격하게 분리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조직체계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휘계통도 다를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일단 사건이 지휘관에 의해서 군사법원에 회부되기로 결정되면 사건은 법무관실로 송부되는데, 이 때 검사 역할을 담당하는 법무관 조직 중에서 검사를 결정하며, 변호인 역할을 담당하는 또 다른 법무관 조직 중에서 변호인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검사와 변호인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들이 모두 법무관이기는 하지만, 다른 조직에 편성되어 있으며 별도로 운영, 관리됨으로써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군 사법제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휘관과 법무참모 등이 재판 절차 전반에 가지고 있는 과도한 권한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고, 군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적독립의 차원에서 안정된 임기(종신)를 보장하는 방안,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에는 배심원을 12명으로 구성해서 공정성 확보를 보다 강화하자는 의견도 최근에 제기되고 있다.

(4) 미국 군 사법제도 관련법령

1) 미국 연방헌법

미국의 군 사법체계를 규율하는 군법전(American Articles of War)은 1775년 6월 30일에 채택되었지만, 사실 미국의 독립선언은 이듬해인 1776이었고 연방헌법이 제정된 것은

6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166-167면.

1787년이였다. 시기상으로 보면 미국의 군법전은 연방헌법 보다 먼저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방헌법이 법률의 제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연방의회에 의해 위 군법전은 개정되었고, 군 사법제도의 근거를 연방헌법에서 찾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⁶⁹⁾ 미국 연방법령집(United States Code) title 10(Armed Forces)은 군사와 관련된 연방 법령을 모아 놓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title 10의 A편은 군일반법(General Military Law, §§ 101 to 2926), B편은 육군(Army, §§ 3001-4882), C편은 해군과 해병대(Navy and Marine Corps, §§ 5001-7921), D편은 공군(Air Force §§ 8010-9842), E편은 예비군(Reserve Components §§ 10001-18506)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⁷⁰⁾

2) 통합군사법전(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 UCMJ)

미국의 군 사법제도와 관련해서 연방의회가 제정한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법률은 통합군사법전이다. 이 법률은 1950년 5월 5일 공포되었고 1951년 5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몇 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⁷¹⁾ 통합군사법전은 형사절차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실제적 내용도 담고 있으며, 사법적 처벌 및 비사법적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통합군사법전 § 802. Art. 2에 따르면 이 법률의 적용대상은 현역의 군인 뿐 아니라 군무원, 군대에 복무하는 의료기관과 같은 준군사적 조직의 구성원, 군교도소의 수감자, 전쟁포로 등이며, 예외적으로 민간인이 포함되기도 한다. 그리고 통합군사법전 Subchapter 제10장은 처벌조항(Punitive Articles)으로서 실제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Art. 77부터 Art. 134까지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는 각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형벌의 종류와 형량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69) 지대남, 앞의 논문, 235면, 구체적으로 연방헌법 Article 1, Section 8, Clause 14에서 연방의회에게 군법전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Article 2, Section 2, Clause 1에서 대통령의 최고사령관으로서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U. S. Constitution, Art. 1, Sec. 8, (14): “The Congress shall have power ... to make rules for the government and regulation of the land and naval forces”; U. S. Constitution Art. 2, Sec. 2, (1): “The President shall be commander in chief of the army and navy of the United States.” 이 규정에만 따르자면 공군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이나, 연방헌법 제정당시에는 공군이 창설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해석상 공군도 포함된다고 본다.

70) 김정현,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29면.

71) 법률명을 ‘통합군사법전’이라고 한 것은 세계2차 대전 후에 미국의 군편제가 국방성을 중심으로 각군이 통합되는 과정에서 각 군마다 가지고 있던 상이한 형사법규정도 통일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지대남, 앞의 논문, 235면 각주 8 재인용.

위임해 두고 있다.⁷²⁾ 통합군사법전은 살인, 강간, 마약, 절도, 음주운전 등 일반형법 상의 범죄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형법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군의 임무수행에 해를 끼치는 행위 등에 대해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즉 군대의 규율에 반하는 행위, 예컨대 군무이탈, 상관에 대한 모욕적 태도, 명령불복종, 직무의 태만, 군용물품의 횡령, 근무 중 음주, 배신 및 간첩행위 등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의 적용대상과 관할 범위와 관련해서 연방대법원은 *Solorio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군사법원의 재판관할은 오로지 통합군사법전을 적용받는 군인 등의 신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행한 범죄가 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범죄행위의 발생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업무관련성의 여부는 관계없다고 하였다.⁷³⁾

<통합군사법전의 구조>⁷⁴⁾

I. 일반조항	General Provisions - § 801 Articles 1 - 6a
II. 체포 및 억류	Apprehension and Restraint - § 807 Articles 7 - 14
III. 비사법적 처벌	Non-Judicial Punishment - § 815 Article 15
IV. 군사재판의 관할	Court-Martial Jurisdiction - § 816 Articles 16 - 21
V. 군사법원의 구성	Composition of Courts-Martial - § 822 Articles 22 - 29
VI. 재판전 절차	Pre-Trial Procedure - § 830 Articles 30 - 35
VII. 재판 절차	Trial Procedure - § 836 Articles 36 - 54
VIII. 판결의 선고	Sentences - § 855 Articles 55 - 58a
IX. 선고후 절차 및 항소	Post-Trial Procedure & Review of Courts-Martial - § 859 Articles 59 - 76a
X. 형벌규정	Punitive Articles - § 877 Articles 77 - 134
XI. 부칙	Miscellaneous Provisions - § 935 Articles 135 - 140
XII. 고등군사법원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 - § 941 Articles 141 - 146

72) 지대남, 앞의 논문, 236면. 예외적으로 제104조, 106조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범죄별로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와 최고형량의 제한에 관해서는 군사법원 교범(Manual for Courts-Martial: MCM)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군사법원은 이 MCM의 규정에 따라 형을 선고한다.

73) *Solorio v. United States*, 483 U.S. 435 (1987).

74)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3) 군사법원 교범(Manual for Courts-Martial, MCM)

미국의 군 사법제도와 관련된 중요한 법령으로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 실질적인 군 사법제도 운영전반에 대해 규율하고 있는 것이 군사법원 교범(MCM)이다.⁷⁵⁾ 이는 앞서 살펴 본 통합군사법전이 § 836 Art. 36에서 “대통령은 본 법에 관한 사건으로서 군사법원 ... 에서 필요한, 입증의 방법을 포함한, 공판전 절차, 공판절차, 공판후 절차에 관하여, ...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있다.”⁷⁶⁾고 함으로써 이 위임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1951년에 ‘군사법원 교범’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즉 통합군사법전의 시행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며⁷⁷⁾ 미국의 군 사법제도 운영에 핵심적인 법률근거가 된다.⁷⁸⁾ 군사법원 교범은 전시와 평시를 구분하지 않고 범죄와 형벌 및 징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통합군사법전의 내용과 군사법원 교범의 내용이 상충한다면 통합군사법전이 우선 적용될 것이다.

군사법원 교범의 서문에는 “군법의 목적은 사법정의를 구현하고, 군의 질서와 군기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군의 운영을 실현하여 미합중국의 국가안보를 보장하는 데 있다.”⁷⁹⁾ 라고 규정하여 군사법원 교범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군사법원 교범은 5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art 1은 서문을 포함하고 군사법원 및 교범의 구성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Part 2(Rules for Courts-Martial: RCM)는 군사법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RCM은 규정들(Rules)과 각 개별규정에 첨부된 주석(Discussio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규정은 구속력이 있지만 주석은 참고의견으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지침으로

75) 김이수, 앞의 논문, 15-19면.

76) 원문은 다음과 같다. UCMJ § 836 Art. 36 “(a) Pretrial, trial, and post trial procedures, including modes of proof, for cases arising under this chapter triable in courts-martial, military commissions and other military tribunals, and procedures for courts of inquiry, may be prescribed by the President by regulations which shall, so far as he considers practicable, apply the principles of law and the rules of evidence generally recognized in the trial of crimin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but which may not be contrary to or inconsistent with this chapter.”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77) 지대남, 한국과 미국의 군사재판제도의 비교, 헌법학연구 제17권 제1호 (2011), 369-371면.

78) 허재석, 앞의 논문, 20-24면.

79) 원문은 다음과 같다. MCM Preamble “The purpose of military law is to promote justice, to assist in maintaining good order and discipline in the armed forces, to promot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military establishment, and thereby to strengthen the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https://www.mcmilitarylaw.com/uploads/6/6/2/2/66228603/mcm_2016.pdf,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할 것이며, 대신 법적용의 탄력성과 변화의 반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정된다. Part 3은 군사증거법 규정, Part 4는 군형법조항, Part 5는 비사법적 절차에 의한 처벌로 구성되어 있다.

(5) 미국 군사 법원의 소집과 관할

1) 군사법원의 소집

미국에서 군사법원은 사건이 발생하면 소집관이 소집명령을 발함으로써 개최되는 비상설 회의체성격을 가지고 있다. 소집관은 일반적으로 지휘관이 되며 군사법원의 유형, 장소, 일시, 배심원 명단을 명시해야 하고, 가능하다면 군판사, 군검사와 변호인의 명단도 포함된 소집명령을 발함으로써 군사법원의 구성을 책임진다.⁸⁰⁾ 군사법원의 소집권한을 가지는 지휘관은 군사법원의 유형에 따라 다른데, 통합군사법전에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약식군사법원의 소집권자는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이며, 만약 지휘관 자신이 고소 또는 고발인인 경우에는 해당 지휘관은 사건을 상급 지휘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특별군사법원의 소집권자는 대대장 이상의 지휘관이 되며 일반군사법원의 소집권자는 장성급의 장교, 국방부 장관, 미국 대통령 등이 된다. 즉 사건 발생 후 이루어진 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지휘관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해 어떠한 군사법원을 소집할지를 직접 결정하거나 지휘절차 상의 상급 지휘관에게 추천함으로써 군사법원이 소집된다.

2) 배심원단의 구성

미국 재판제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배심제는 군사법원에도 적용된다. 군사법원의 소집관은 일반장교, 기술장교, 기타 사병 중에서 나이, 교육 및 훈련의 정도, 군에서의 경험 및 경력, 성향 등을 고려해서 배심원을 선정한다. 배심원단은 비밀투표방식으로 평의를 진행하지만, 투표 전에 다른 배심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는 있다.⁸¹⁾ 만약 유죄평결을

80)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286면.

81) 허재석, 앞의 논문, 20-24면.

내리는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의 경우처럼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정도”의 유죄라는 심증이 있어야 하지만 만장일치제로 이루어지는 일반법원과는 달리 배심원 3분의 2 이상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배심원단이 아니라 군판사 1인에 의해서만 재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심원단이 구성되지 않지만 최고형이 사형인 사건의 경우에는 반드시 군판사 1인과 5인 이상의 배심원단을 구성해야 하고, 배심원단이 만장일치인 경우에만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⁸²⁾

<군사법원 유형별 소집권자 및 배심원 구성>⁸³⁾

약식군사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권자- 중대장 이상의 지휘관 • 대상- 병사에 한정 • 구성- 장교 1인
특별군사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권자 - 대대장 이상의 지휘관 • 대상- 장교 등 모든 군인 • 구성 - 1인의 군 판사와 3인 이상 배심원
일반군사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집권자 - 장성급 장교, 국방부장관, 대통령 등 • 대상 - 장교 등 모든 군인 • 구성 - 1인의 군 판사와 5인 이상의 배심원

3) 미국의 군사법원 종류와 관할

통합군사법전 § 816 Art. 16이하에 따라 미국의 군사법원은 3심제를 취하고 있다.⁸⁴⁾ 제1심은 범죄의 정도에 따라 약식군사법원(Summary Court-Martial), 특별군사법원(Special Court-Martial),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Martial),의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고

82) UCMJ § 816 Art. 16. (Courts-Martial classified) “The three kinds of Courts-Martial in each of the armed forces are (1) general Courts-Martial, consisting of (A) a military judge and not less than five members; or (B) only a military judge, if before the court is assembled the accused, knowing the identity of the military judge and after consultation with defense counsel, requests orally on the record or in writing a court composed only of a military judge and the military judge approves”;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83) 송영선, **군기확립! 군인권 보호! 강한 군대 만드는법!**: 군 사법제도 개혁법을 쟁점과 전망, 2007, 23면 [참고자료 5]를 재편집하였다.

84) 연방대법원의 심리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4심제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견해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5)**, 304면.

할 수 있고,⁸⁵⁾ 제2심 법원으로서 각 군의 법무감실에 설치된 군 항소법원과 제3심 법원으로서 국방성에 설치된 군상고법원이 있다.⁸⁶⁾ 여기에 더해서 당사자가 연방대법원에 심사를 요청하고 연방대법원이 군상고법원의 판결을 이송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연방대법원에서 심사할 수도 있다.⁸⁷⁾

① 약식군사법원(Summary Court-Martial)

약식군사법원은 위의 세 가지 법원 유형 중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벌의 가장 낮은 법원이라고 할 수 있다.⁸⁸⁾ 이는 신속한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 마련된 간이재판절차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며,⁸⁹⁾ 경미한 범죄를 범한 사병을 대상으로 한다.⁹⁰⁾ 현역으로서 피고인과 동일한 부대의 구성원인 장교로 재판부가 구성되며 초동 수사 이후, 소집권자에 의해 소집된다. 약식군사법원에서 피고인은 혐의사실의 인정여부, 부과될 수 있는 형벌의 종류와 범위 등에 대해 고지 받고, 동의하는 경우 그에 따라 형을 선고받는다. 다만 피고인이 약식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시 일반군사법원이나 특별군사법원에서 정식적인 재판절차가 진행되게 된다.⁹¹⁾ 약식군사법원에서 선고할 수 있는 형벌

85) 미국 군사법원의 유형은 가장 간이한 절차로서 약식군사법원과 다음 단계로서 특별군사법원이 상정되어 있는데 원문인 ‘Special Court-Martial’의 ‘Special’은 사실 가장 높고 특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식(Summary)절차와 구분하기 위해서 ‘Special’이라는 단어를 쓴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General Court-Martial’도 대체로 ‘일반군사법원’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 ‘General’은 ‘일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군’이라는 뜻으로 봐야 한다. 즉 ‘General Court-Martial’은 세 가지 군사법원의 유형 중에서 소집권자가 장성급인 가장 높은 단계의 군사법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군군사법원’이라고 해야 하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군사법원’으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280면 각주 2의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86)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5), 326면. 군상고법원은 미국 연방헌법 제1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인준을 받아 민간인 중에서 임명한 3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15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군항소법원의 판결 중 사형이 확인된 사건이나 법무감이 군상고법원에 회부하도록 명령한 사건 등을 관할하며, 법률심을 담당한다.

87)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5), 326면. 군상고법원의 판결도 사건이송명령서(Writ of Certiorari)에 의하여 연방대법원으로 이송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연방대법원은 사건이송명령서가 있다 해도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88) 김이수, 앞의 논문, 15-19면.

89) MCM art. 79a. (https://www.mcmilitarylaw.com/uploads/6/6/2/2/66228603/mcm_2016.pdf,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90) MCM art. 16a. (https://www.mcmilitarylaw.com/uploads/6/6/2/2/66228603/mcm_2016.pdf,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91) MCM art. 79d(2). (https://www.mcmilitarylaw.com/uploads/6/6/2/2/66228603/mcm_2016.pdf, 최종접속 2017년 11

은 “1개월 이하의 구금, 45일 이하의 구금 없는 강제노역, 2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특정구역 밖으로의 외출금지, 3분의 2이하의 월급 몰수” 등이다.⁹²⁾ 신속하고 간소한 사건처리를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가기는 하지만, 약식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의 구성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장교로 구성될 수 있는 점, 변호인 없이 심리가 진행될 수 있는 점, 재심규정의 미비한 점, 피고인의 기피신청권을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연방헌법에 위반된다는 비판이 있다. 즉 약식군사법원의 재판절차 과정에서 연방수정헌법 제6조가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제5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약식군사법원의 재판절차는 정식적인 형사소추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지 못하더라도 연방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이 약식군사법원의 재판절차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절차인 특별군사법원이나 일반군사법원에 의한 재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몇 가지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부분도 가석방취소절차나 소년심리절차처럼 군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하였다.⁹³⁾

② 특별군사법원(Special Court-Martial)

특별군사법원은 재판의 구성과 선고할 수 있는 형벌 등을 감안했을 때 약식군사법원보다 상위의 법원이라 할 수 있다. 특별군사법원은 최고형이 사형인 사건을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으며,⁹⁴⁾ 피고인의 신분이 장교인지 사병인지 관계없이 통합군사법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서 3인 이상의 배심원만으로 구성되거나, 1인의 군판사와 3인 이상의 배심원, 군판사 단독 재판의 형태로 구성될 수 있다. 다만 구성에 있어서 피고인의 계급에 따라 제한이 있다. 피고인이 장교인 경우에는 재판부의 구성은 장교로만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이 사병인

월 10일).

92) UCMJ § 820 art. 20.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93) *Middendorf v. Henry* 425 US 25(1976)에서는 약식군사법원에서 변호인 부재는 위헌사항이 아니라고 했고, *United States v. Booker*(C.M.A. 1977)사건에서 약식군사법원의 절차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정하였다.

94) 법정형이 사형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MCM이 특별군사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건의 경우에는 재판할 수 있다.

경우에는 재판부의 3분의 1이상을 사병으로 구성해야만 한다. 특별군사법원의 소집권자는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이 되며 약식군사법원과는 달리 피고인에게 소집된 특별군사법원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식재판과 같이 피고인의 증인 신청권, 증인에 대한 반대신문권, 진술거부권 등이 인정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특별군사법원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전역, 1년 이내의 구금, 3개월 이하의 구금 없는 강제 노역형, 월급의 3분의 2이내 몰수, 6개월 이하의 급여지급유예, 최하계급으로의 강등” 등을 선고할 수는 있지만, 불명예제대(Dishonorable Discharge)를 선고할 수는 없다.⁹⁵⁾

③ 일반군사법원(General Court-Martial)

일반군사법원은 소집되는 정식재판으로서 군사법원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서 장교 인지 사병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군사법전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람과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형과 무기징역, 불명예제대를 포함하는 모든 형을 선고할 수도 있다.⁹⁶⁾ 일반군사법원은 일반적으로 1인의 군판사와 5인 이상의 배심원으로 구성되지만,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군판사 단독으로 심리를 진행할 수도 있다.⁹⁷⁾ 다만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경우에는 군판사 단독심리는 불가능하다. 소집권자는 장성급 장교이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국방부장관이나 대통령이 소집할 수도 있으며 군 점령지나 전시에는 민간인의 재판도 관할하게 된다. 일반군사법원에서의 재판절차는 특별군사법원과 대부분 유사하지만 피고인의 변호인은 반드시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여야 하며, 군판사가 항상 임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런데 미국의 군 사법체계에서 가장 강력한 정식재판절차로서의 군사법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군사법원은 명칭과는 다르게 통상의 형사사건인 경우에 일반군사법원에 회부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⁹⁸⁾

95) UCMJ § 819 art. 19.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96) UCMJ § 818 art. 18.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97) MCM art. 4a. (https://www.mcmilitarylaw.com/uploads/6/6/2/2/66228603/mcm_2016.pdf,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98)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280-292면.

4) 재판 후 상소절차

위에서 살펴 본 각 유형별 군사법원에서 제1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재판 후 피고인은 각 군의 군법무감실에 설치되어 있는 군항소법원(Court of Criminal Appeals)에 항소할 수 있으며, 군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국방성에 설치되어 있는 군상고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에 상고할 수 있다.⁹⁹⁾

통합군사법전 § 866. Art. 66에 따라 각 군의 법무감실에는 각 군의 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고 § 866. Art. 67에 따라 워싱턴 DC에는 연방군항소법원이 있다. 피고인이나 검찰관이 항소하는 경우 뿐 아니라, 법무감의 직권에 의해서도 항소법원의 절차는 진행될 수 있으며, 제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거나, 장교 또는 사관후보생의 해임, 불명예전역 결정, 그리고 1년 이상의 금고형 등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군항소법원이 개최되어야 한다.¹⁰⁰⁾ 항소법원은 3인 이상의 합의부 형태의 판사로 구성되는데 현역인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무장교 중에서 연방법원이나 주의 최고법원 산하 변호사협회 회원에서 선임한다. 군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를 심리하고 형의 감경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만약 제1심 판결의 법률적 오류와 사실관계가 정확하다면 선고된 형을 승인함으로써 종료된다. 제3심으로서 군상고법원은 국방성에 설치된 연방차원의 군법원으로서 재판부의 구성은 대통령이 상원의 심사와 인준을 거쳐서 임명한 5인의 일반인 판사로 이루어진다. 군상고법원은 군사법체계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에 위치한 법원이기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과 엄격성을 기하기 위해 임명된 판사의 임기를 15년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연임할 수도 있다. 다만 군상고법원은 모든 군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이나 함대의 사령관 등이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에 대해 선고된 형이 사형이고 군항소법원에서 승인된 경우, 각 군의 법무감이 군항소법원의 판결을 군상고법원에서 다시 심리해 줄 것을 요청한 경우 등에 대해 재량으로 판단한다.

99) 박연규, 평시 군사법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41면.

100) UCMJ art. 66(b), 67(b)(1), 71, 72(d).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6) 미국 군 사법제도 상 인권보호 제도

미국 연방대법원의 긴스버그 대법관은 “군인이 입대한다고 해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리와 법적인 보호를 유보한 것은 아니다. ... 군대의 구성원은 지휘관의 관대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대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¹⁰¹⁾ 즉 군대라는 특수성에 따라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할 수 있는 기본권의 범위가 일반 국민들보다는 넓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 군인이라는 신분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법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어 질 필요가 있으며, 군이라는 특수성의 강조 속에서 군인의 인권문제가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군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사건에서의 피고인 보호를 위한 절차를 보강하고 지휘관에게 군사법원의 소집 및 배심원단 선택 등 군사법원의 구성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점 등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¹⁰²⁾ 한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군에서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군사법체계 안에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왔다. 예컨대 군 복무 부적응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 등과 여성 군인에 대한 고충처리 프로그램 등이 있다.

1) 복무 부적응자 정책¹⁰³⁾

외국에 주둔했거나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해외파병 군인들 중에 이른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거나 복무부적응 증세를 보이는 자들에 대해 정신건강 검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¹⁰⁴⁾ 이는 군인의 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치료를 통해서 복무의욕을 증진시키고 필요한 직업교육의 제공까지 포함한다.¹⁰⁵⁾ 특히 복무 부적응이나 정신

101) Weiss v. United States, 510 U.S. 163 (1994);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03), 9면 재인용.

102)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5), 334면.

103) 국가인권위원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2012), 181-191면.

104) 국가인권위원회, 군인 권리보호 및 구제체계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4), 38면.

105)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38면.

건강을 위한 상담 체계는 의료시스템의 일부로서 시행되고 있는데,¹⁰⁶⁾ 상담의 결과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는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되고 해당 군인의 임무 재배치와 조정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해외파병 이후 자살이라는 위험에 처한 군인들이 급증하는 상황¹⁰⁷⁾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작성된 자살사고 예방 프로그램 지침에 따라 복무생활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서 자살을 예방하고 있다.

2) 여성군인 고충처리제도¹⁰⁸⁾

여성군인의 복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대표적인 상황 중 하나인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은 성폭력방지 및 대응국(The 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을 통해서 감독하고 있다. 이 기관은 군의 문화 및 군인을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성폭력 대응 코디네이터(Sexual Assault Response Coordinators), 피해자 변호단(Victim Advocates), 성폭력 사건 전담 수사진, 성폭력 피해자 치료진 등의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치료와 조치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또 국방성은 산하에 여성복무자 자문위원회(Defense Advisory Committee on Women in the Service)를 설치해서 여군의 채용, 재직, 통합, 삶의 질 향상 등과 같은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나아가 휴직제도(Career Intermission Pilot & Leave Programs)는 여군이 출산 등의 이유로 일정한 기간 동안 휴직을 원하는 경우 1년에서 3년의 기간 범위 안에서 허용하고 있으며, 여군 뿐 아니라 남군에 대해서도 부성 휴가를 허용하고, 입양휴가도 포함시키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휴직 중이라도 군에서 제공하는 의료지원과 각종 복지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받는다.¹⁰⁹⁾

106)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40면.

107)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46면. 실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작전 이래 2002년과 2007년 사이에 자살사고가 급증하였고, 자살로 인한 사망의 87%는 현역장병이었으며, 42%는 파병장병이거나 12개월 안에 파병 경험이 있었던 장병이었다고 한다.

108)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 78-83면.

109) 국가인권위원회, 앞의 보고서(2014), 54면. 휴직 제도는 퇴역 후에는 할 수 없는 경험 및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모성보호 휴직은 임신 및 출산 후 6주, 입양 휴직은 입양을 한 후 12개월, 부성 휴직은 배우자가 출산 후 10일이 주어질 수 있다.

제4장

입법 대안제시

- I. 입법방안
- II. 종 직
- III. 기구의 설치와 권한
- IV. 권리구제

제4장

입법 대안제시

I. 입법방안

1. 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설치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입법방안은 담당기관에 따라 제도적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 즉, 특정기관에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며, 이러한 논의가 제도도입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특정한 기관에 소속된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방식의 입법방식이 아닌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군인권보호관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인권위 혹은 권익위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이 아니라 기관 소속이지만 기관으로부터 분리된 ‘군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국회나 국방부 소속의 기구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소속과 분리된 독립기구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를 경우, 사회적·정치적 합의에 따라 담당기관이 정하여질 경우, 제시된 입법방안을 기관의 운영방안과 접목하여 입법화 방안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군인권보호관이라는 ombudsman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군인권보호관의 특성에 따른 입법적 방안의 구상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제 명

“군인권보호관”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으로 기본법에서 요청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제명은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과 권한과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제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1안으로는 「군인권보호관법」. 이 제명은 간명하면서도 전체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제명이지만, 제명만으로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을 유추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또한, 기구설치만을 제도화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과 활동 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포괄할 수 있는 제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제2안으로는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제명은 기구 구성과 활동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명에 담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제명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운영’이라는 제한적인 용어의 쓰임으로 인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역할 등을 제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제명이라고 할 것이다. 제3안으로는 「군인권센터 및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 안은 군인권보호관이 소속될 기관의 명칭과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설치 등을 포괄적으로 제명에 담은 방안으로서 기관과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제명을 통하여 이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제명이 너무 길고 중복적인 제명이라는 점 등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국회에 제출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¹¹⁰⁾과 같이 소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만을 제명에 제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¹¹¹⁾과 같이 기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하는 법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제명의 선택은 간결한 것이 좋지만, 그 내용과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은 만약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의 군인권보호관을 제도화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추가적으로 개정하는 방식

110)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2017.1.20)

111)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2017.6.14)

의 입법이 아닌 독립된 “군인권보호관법”의 제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군인권보호관은 인권위원이 수행하는 것이지만, 입법체계적인 관점에서는 보다 독립된 조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제정입법의 형식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이 보다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군인복무기본법」이 별도의 법률로 군인권보호관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보다 적합한 방안일 것이기 때문이다.

II. 총 칙

1. 목적

군인권보호관의 설치 목적은 「군인복무기본법」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하여 기본법의 입법목적인 선진 정예 강군 육성의 밑받침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군조직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에서 요청하고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원칙에 기초한 인권보장 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하면, 국가기관으로서의 본질적인 존재가치를 부정당할 수 있다는 점을 입법제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군에 소속된 군인들 역시 인권보장을 위한 상호간의 노력과 존중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선진강군으로 거듭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안규백의원안은 입법목적에 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을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군 및 사회 전반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군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김학용의원안은 입법목적에 대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 제도의 신설을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및 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백혜련의원안은 본질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입법목적인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

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모든 개인에 군인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제안이유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직법으로서의 성격과 군인의 인권보호라는 입법목적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러한 제도의 본질적이며 궁극적인 목적은 병영문화 개선이며, 나아가 군의 본연의 임무완수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을 확인하는 목표규정을 두는 형식으로 입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 정의규정

(1) 군인

군인권보호관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입법적으로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항이 군인권보호의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의하는 문제라고 할 것이다. 군인권이라는 점에서 현재 군에 복무 중인 군인은 의무복무자는 물론 모든 군인이 그 대상이 될 것이다. 이에 관하여 기본법은 군인을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다만, 기본법 제3조에서 적용대상으로 ①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②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무원도 그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적용대상을 기본법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군무원을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군무원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군인이 아니지만, 군사상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군인에 준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군인에 준하여 법령

을 적용받는다라는 점에서 기본법의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군인 또는 군부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그 본질적인 차이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¹¹²⁾ 이 견해에 따를 경우, “군인과 군무원의 구분, 군무원과 일반공무원의 구분 등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¹¹³⁾”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무원 역시 군사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는 점에서 기본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며, 군인권보호관의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안이라고 할 것이다.

<제안 법률안 비교>

법률안	내 용
안규백의원안	“군인”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 ¹¹⁴⁾ 에 따른 군인을 말한다.
김학용의원안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 각 호 ¹¹⁵⁾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백혜련의원안	“군인등”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군무원·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말한다.

안규백의원안의 경우 「군인복무기본법」상의 정의규정의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기본법 제3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적용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 안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제3조는 별도의 규정을 적용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그 적용대상을 기본법 제3조를 포함하는 형식으로 입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김학용의원안의 경우 「군무원인사법」에 따라 규율되고 있는 군무원의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권침해”에 관한 정의규정에서 “군인 또는 군무

112) 황창근, 앞의 논문, 54면.

113) 황창근, 앞의 논문, 54면.

114)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115)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원(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라고 하여 군무원을 그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있어서 적용 대상에 관하여 구분하고 있다. 백혜련의원안은 군무원은 물론 기본법상의 적용대상자를 포괄적으로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입법형식의 측면에서 이를 각 목으로 구분하여 서술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정의규정은 이 법에서 적용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개념적으로 확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방안을 내용과 형식적인 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인에 관한 정의는 군 관련 입법에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는 바, 이에 관한 것을 준용하는 형식의 입법이나 직접 서술하는 방식 등이 모두 가능하지만, 입법상의 불비를 없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직접 서술방식이 적절할 것이라는 점과 제정입법상이 적용대상자를 해당 입법에서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서술방식의 정의규정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대상의 적절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역시 입법형식적인 면에서 부적절한 방안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입법형식을 2개의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개정안 의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 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 나.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 다.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 라. 군무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등”이란 「군인복무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자와 제3조 각 호의 자를 말한다.

(2) 인권침해

이 법의 제정목적이 군내 인권침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대상이 되는 인권의 내용과 범위 및 인권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

다. 제시된 입법안에서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 법률안 비교>

법률안	내 용
안규백의원안	“군인의 기본권”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장에 따라 보장되는 군인의 기본권을 말한다.
	“군인의 기본권 침해”란 군인의 기본권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0조제2항 ¹¹⁶⁾ 에 따라 제한되는 범위를 넘어서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김학용의원안	“군인권침해”란 군인 또는 군무원(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또는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백혜련의원안	“군 내 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안규백의원안은 기본법의 입법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인권’보다는 ‘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기본법의 입법내용에 따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의 범위를 기본권 제한을 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는 소극적 침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김학용의원안과 백혜련의원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서 조사대상 인권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공통적인 기준으로 하고 있다. 다만, 김학용의원안은 “인간존엄과 권리침해 및 차별행위”에 관한 포괄적 적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백혜련의원안은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질적으로 제시된 법률안의 차별행위의 적용범위에 큰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만, 적용의 한계라는 점에서 살펴보면 그 대상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116) ② 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점에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인권침해는 헌법상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의 침해는 물론 과도한 의무부과의 경우에도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은 적용범위에 있어서 적절성에 의문이 있다. 이와 더불어, 기본법에서 ‘병영생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군인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병영생활에 관한 사항을 적절하게 규율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점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형식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법문에 명확하게 제시하는 이유는 기본권 침해의 내용을 제한적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군인권보호관의 활동에 관한 제한사유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복무에 따른 의무사항에 관하여 군내부의 병영생활의 일부라는 점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직무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논란을 입법적으로 불식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권리침해와 과도한 의무부과의 내용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동일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그 법리의 적용과 집행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제1항의 인권은 인권의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관련 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안 의견>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군인등의 기본권 침해”란 군인등이 복무 중 발생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권리침해가 발생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장에 따른 의무를 과도하게 부담하는 행위 및 같은 법 제5장의 병영생활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와 그 밖의 규정

(1) 다른 법률과의 관계

총칙에 필요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군인권보호관이 우선 적용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군인의 기본권 침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법률의 입법적 위상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제안 법률안 비교>

법률안	내 용
안규백의원안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군인의 기본권 침해(이하 “군인기본권침해”라 한다)에 대한 진정과 조사 등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이하 “군인기본권보호”라 한다)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김학용의원안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 해결을 위한 군인권 특별보호관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군인권보호관의 활동에 관한 우선 적용규정이라는 점에서 관련 활동을 중심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군인권보호관의 활동을 위한 국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개정안 의견>

제 3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군인권보호관의 활동과 업무수행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국가는 군인권보호관의 활동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국가의 책무

“국가의 책무” 규정을 두어 정책수립과 국가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운영의 기본원칙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군인권보호관의 책임성을 입법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을 둘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선언적 규정은 반드시 입법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인권침해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법률집행에 관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는 것 역시 필요한 입법적 방안으로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개정안 의견>

안규백의원안	제 4 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기본권침해와 군인의 기본권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군인권보호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과 군인인권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Ⅲ. 기구의 설치와 권한

1. 설 치

군인권보호관의 제도화 방안에 대하여 국회 설치를 주장하는 안¹¹⁷⁾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별도 명칭의 조직을 두지 않고 국회군인권보호관 자체를 하나의 조직으로 분류하여 규율하고 있다. 국회가 정치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기관체계에 관한 사항을 설치에 관한 필요사항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117) 안규백의원안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2017.1.20 의원입법으로 제출

설피하는 경우 필요한 관련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즉, 군인권보호관이 그 조직의 사무를 총괄하면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부속업무는 국회 조직체계에 따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인원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1인을 두는 것으로 하고, 그 소속 사무처를 별도로 두어 업무지원을 하는 조직형식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지위에 관하여는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도록 하고 있다.

제 6 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지위)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군인권보호관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 및 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8 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면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국방부에 설치하는 안¹¹⁸⁾은 그 명칭을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 하면서 그 소속을 국방부로 하되, 독립된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위 등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와 더불어 임명에 있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속기관으로 군인

118) 김학용의원안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7.6.14 의원입법으로 제출

권보호처를 두도록 하고 있다. 보호처는 처장하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군인권특별보호관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임명하면서, 그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처의 기능을 처장 중심으로 편성하는 것에 관하여는 근본적인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는 방안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 6 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명)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 7 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10조(군인권보호처)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 직속으로 군인권보호처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처에는 군인권보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처장 및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처장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지휘를 받아 군인권보호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군인권보호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파견요청 등)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인등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인권특별보호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등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

- ④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등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군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안¹¹⁹⁾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 1인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고 지원조직으로 인권위 산하 사무처 소속의 군인권분부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인권위의 위원회와 별도로 군인권보호관이 위원장인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두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3-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문위원을 두어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¹²⁰⁾ 임기 등 조직운영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선출, 임기와 직위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에 준하여 적용될 것이며, 법적 지위 또한 상임위원에 준하여 적용될 것이다.

제51조(군인권보호관) ① 상임위원 중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군인등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을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국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제1항의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제52조(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군인권보호위원장으로 하고,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군인권보호위원장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119) 백혜련의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1 의원입법으로 제출

120) 위원회 조직의 전문위원과 사무처의 본부조직은 중복적인 조직체계라는 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군인권보호관을 별도의 기구로 설치하는 경우, 그 법적 지위를 함께 입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속기관이지만, 그 설치와 활동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자격요건에 있어서 군 경력 등은 포함하여서는 안되며, 전적으로 민간의 자격을 그 요건으로 하여 임명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기구인 경우에는 국회 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국회기구인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과 본회의의 의결의 거쳐서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의 인원은 현재 제시되고 있는 안은 1인의 군인권보호관을 두는 것을 전제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지만, 1인만을 임명하는 방안과 다수의 보호관을 임명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군인권 분야 역시 단일한 분야가 아니며, 인권분야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군사행정에 관한 사항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3인 이내의 군인권 보호관을 업무별로 나누어 임명하고, 관련 업무를 협의하여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로 운영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3-5년 정도의 기한을 가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단기인 경우에는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장기인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과 견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연임 여부는 큰 고려사항이 아니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을 인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의 활용이라는 점에서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결격사유는 공무원 결격사유를 준용할 수 있을 것이며, 군인권보호관의 특성상 외국인과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임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며, 군인의 경우에는 현직에서 은퇴 후 2년 정도의 기간이 경과한 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은 당연히 정치적 중립의무를 지며, 다른 정무직 및 임명직을 겸직하는 것은 금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민간의 영리목적 업무 또한 겸직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한 입법방안이 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은 법관에 준하는 신분보장을 법률에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이 충실하게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조

직에 관한 사항을 입법사항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이 조직은 단순한 보조업무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행정청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여야 할 것이다.

2. 업 무

군인권보호관의 업무에 관하여는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다만, 이 조사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도 권한행사의 방안 등을 고려할 때, 많은 차이가 있다. 즉, 진정조사와 직권조사는 물론 현장조사를 인정하며, 중장기적 관점의 실태조사와 정책제안 및 건의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사의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하여는 각 기구별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안규백의원안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주된 임무는 진정사건의 조사업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군인권침해에 관한 진정이 있는 경우 이 진정사건의 조사활동을 위한 방안 등을 입법의 주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권침해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각해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다른 구제절차를 통하여 구제되어야 하는 경우의 사건이송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는 정보 및 기록접근권을 인정하고, 당사자 및 관계인의 직접 조사는 물론 자료제출 요구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조회권과 질문·검사권이 인정되며, 필요한 경우 조사 또는 수사의 입회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진정조사 결과에 따라 이를 기각하거나,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발 및 징계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 4 장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조사와 구제

제14조(조사 대상) 진정조사와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제15조(진정의 각하 등)

제16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제17조(수사기관과 국회군인권보호관의 협조)

제18조(조사의 방법)
제19조(질문·검사권)
제20조(동종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의 입회)

김학용의원안에 있어서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무는 진정사건의 조사와 구제, 장관의 지시 혹은 직권조사, 실태조사, 정책제안 및 건의, 군인권 실태에 관한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사실조회 및 진술청취 등에 관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으며, 방문조사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진정사건의 절차와 직권조사에 관한 권한에 따라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다.

제 3 장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와 권한

제13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이 제기된 군내 인권침해 및 고충에 대한 조사와 구제
2.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또는 직권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3. 진정인과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보호
4. 군 인권개선, 고충처리 및 병영문화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5. 군내 인권침해 구제 제도 시행 실태의 감독
6. 그 밖의 군 인권개선,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 정책의 제안 및 건의

② 그 밖에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제15조(진술청취)

제16조(방문조사)

제17조(시정권고등)

제18조(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백혜련의원안은 군인권보호관의 업무가 아닌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명시하면서 군인 인권조사와 연구 및 개선권고와 의견표명에 관한 사항,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방문 및 직권조사,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대내외 기관 협력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 방문조사에 관하여는 별도의 조문을 마련하여 상세한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사특례 규정을 두어 현장조사와 감정, 자료제출 등에 관하여 관련 사항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관련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절차와 기준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입법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53조(군인권보호위원회 업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의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의 개시결정,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위임한다.

1.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3.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개시
4. 군인등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군인등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군 내 인권침해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8.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그 밖에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군부대 방문조사)

제55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제56조(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일반적으로 자료제출과 진술청취, 방문조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조사권한에 따라 인정되고 있지만, 이러한 활동을 자유롭게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다양한 제약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국가안전보장이나 국가기밀 등을 사유로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어 군인권보호관의 실질적인 활동을 유명무실하게 하거나, 조사가 신속정확하게 수행되는 것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이와 더불어 조사 등의 활동이 기존의 조사 및 수사 조직과의 권한 관계 등으로

계약받는 경우 등에 관한 사항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군수사 혹은 검찰이 조사 혹은 수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활동이 인정되지 않는 것과 같은 제약이 될 것이다.

조사대상자 역시 출석요구권 등은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강제구인 등에 있어서는 군인이라는 신분상의 제약 등으로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예외규정을 두는 방안으로 회피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사전 통지 없는 부대 불시 방문조사에 관한 권한과 당사자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시정권고에 관한 권한 역시 기존의 해당 기관 통보의 방식이 아니라 사후적 조치에 관한 점검과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권고에 관한 조치사항을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상급행정기관의 활동과 국회의 활동 등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의 인권보호활동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후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그 권한을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군인권보호관은 정기적으로 국회에 활동성과와 시정조치 결과 및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건의 경우 수시로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대국민 견제기능은 물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고된 결과와 함께 대국민 군인권백서와 같은 보고서를 발간하여 그 활동에 관한 대국민 성과보고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3. 자격

군인권보호관의 자격에 관하여는 일정한 기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요건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전문성의 자격기준을 제시할 필요보다는 사회적 명망 등 조사결과에 관한 신뢰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안규백의원안의 경우, 임명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정부직의 성격상 이에 따른 임명권자의 검증 등이 따를 경우 특별한 자격요건을 두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다만,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자격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공무원이거나 3년 이내내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결격사유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것이다.

제 9 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회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국회군인권보호관 임명일 전 3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김학용의원안은 임명자격과 결격사유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임명자격은 주로 법조인, 교수, 공무원 및 인권활동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임명자격의 요건은 인권분야의 전문성과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으로서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지만, 일정한 전문성과 독립성의 자격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수 있을 것이다.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의 결격사유를 포함하여 정당의 당원과 선거입후보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적 중립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력자를 배제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서는 적극적으로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을 명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및 공무원의 직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가입과 정치활동 관여금지규정을 두고 있다.

제 6 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명)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여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군인권특별보호관 후보 추천을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인권특별보호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명의 후보자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인을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군인권특별보호관 임명 및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 8 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 9 조(겸직금지의 의무 등)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군인권특별보호관 외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
-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백혜련의원안의 경우 본질적으로 인권위원의 임명과 자격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다. 인권위원은 주로 교수직, 법조인, 인권활동가 및 추천받은 명망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결격사유는 공무원 결격사유와 정당의 당원 및 선거입후자가 아니어야 하며, 의원의 직과 공무원 및 위원회에서 정한 겸직금지의 직이나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6.2.3.>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①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의 직
 2.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의 직
 3. 그 밖에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 ②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군인권보호관의 자격에 있어서 특별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는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법조인과 교수 등 특정직업군에 관한 자격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군인권보호관의 자격에 필요불가결한 기준인가에 관한 것을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의 자격요건은 오히려 인권보호활동에 관한 경력 등을 고려한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며, 조사와 행정경험 등을 요구하는 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격기준은 엄격한 자격요건으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문성의 자격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별도의 관련 규정을 두지 않고 군인권에 관한 전

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결격사유와 겸직금지에 관한 사항은 각 법률상의 기준에 따라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인권보호관에 임명하는 것은 금지하여야 할 것이지만,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한 금지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군인 혹은 군인이었던 사람에 대한 규제는 필요한 부분일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보호관의 본질상 군인 또는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군출신 인사의 경우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군의 전문성은 지원기관 소속 직원 등의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며, 군인권보호관을 군인이나 군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고려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다.

IV. 권리구제

기구의 설치는 군인권보호라는 입법목적의 최소한의 조치이며, 실질적으로 인권침해를 당하는 당사자의 권리구제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법에서는 군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기구의 설치와 활동에 관한 사항만을 규율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진정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방안과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군인 등의 진정은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어떠한 제약도 없는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사건은 원칙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직접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그 결과의 통보 등도 직접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다른 기관이 권리구제기관으로서 더 적합한 경우나 현재 사법적 권리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 등 직접 조사진정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는 적절한 조치를 통하여 권리구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이 종결된 사건에 관하여 진정한 경우, 특히 군사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난 경우의 진정에 관하여는 일반적으

로 진정을 각하할 사유로 제시하고 있다. 즉, 이러한 사안은 사법절차의 재심절차 등으로 구제받아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군검찰 또는 군사법기관을 통하여 종결된 사건의 재심진정은 별론으로 하고, 수사 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관한 조사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공동참여 혹은 참관 등의 방법으로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한 의견개진과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진정의 각하와 기각>

입법안	관련 내용
안규백 의원안	<p>제15조(진정의 각하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의 내용이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군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군형법」 제4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진정이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입법안	관련 내용
	<p>제21조(진정의 기각)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김학용 의원안	<p>제21조(진정의 각하)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의 내용이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본문의 기한 내에 진정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군인권특별보호관이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p>제22조(진정의 기각)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가 군인권보호관에 해당사항에 관하여 진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든 사안을 조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법령상 조사대상이 되는 진정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대상이 아닌 진정의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률에 이 각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에도 진정각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관련 규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진정각하 사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조사대상이 아닌 진정과 거짓 혹은 허위로 진정한 경우가 해당될 것이며, 이것은 당연히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진정사항의 확인에 있어서 진정이 이유없음이 확인된 경우 역시 진정각하 혹은 기각을 통하여 진정사항을 종결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실제운영에 있어서 진정각하 사유의 확인과정에 있어서 매우 불명확한 경우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전적인 확인조사 등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특정인의 진정확인을 위한 관계 기관 문의 등의 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민원사안과 같이 이미 종결된 사안임을 제시하는 형식적인 확인과정만을 거치는 경우에는 군인권의 특성상 명확하고 구체적인 확인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확인조사에 관한 법률적 근거 등을 마련하는 것 역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공권력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구제절차의 요청이나 신속한 진정이송 등을 통하여 적극적인 권리보호의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즉, 군인권보호관이 조사결과 다양한 조치를 제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필요하다면 군인권보호기관의 조사관의 공동참여 혹은 간여가 인정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징계가 필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결과에 관한 군인권보호관에게의 사후적 보고 혹은 통보는 의무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징계의 정도에

있어서 군인권보호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고, 이에 관한 이견에 대하여 상호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고발과 권고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관계 기관의 재량판단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피진정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진술과 개선의 기회보장은 진정인의 인권보호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되어야 할 사안이다. 무고 또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등도 일반적인 무고나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가중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제시된 통상적인 조사와 권고 권한에 더하여 인권침해의 양태에 따라서 긴급구제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인권보호관의 판단으로 필요한 긴급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사항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긴급조치는 피해자의 신변보호 등의 조치와 치료 등을 위한 긴급이송 등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에 따른 불이익을 진정인이 받지 않도록 당사자 보호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즉, 진정으로 인한 인사조치 등 불이익조치는 물론 내부적인 차별과 직무배제 등의 불이익조치 등 모든 불이익조치가 이행되지 않도록 입법적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적극적인 보호조치 방안 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안	관련 내용
안규백 의원안	<p>제26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군인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2. 부대·기관이나 장소 또는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감정 또는 다른 부대·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등의 군 내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입법안	관련 내용
	5.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정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김학용 의원안	제26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직권으로 또는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긴급구제조치”라 한다)를 취할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제조치로 인하여 군사 임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권 침해 행위 및 폭행·폭언·가혹행위 등의 중지 2.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3. 피해자의 의료시설 이송 4. 그 밖에 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

긴급구제조치는 군인권의 특성상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한 부분일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긴급구제조치의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8조가 제시하고 있는 요건에 더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군이라는 특수성에 따라 진정인이 공개된 경우의 별도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소속기관의 장이 아닌 군인권보호관의 직권으로 관련 긴급구제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형사법상의 증인보호에 관한 제도 등과 유사한 진정인 보호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조치 등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긴급구제조치의 권고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의 조치를 통하여 긴급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진정인 등 당사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의무를 부과하는 것 역시 입법사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일 것이다. 단순한 선언적 보호의무규정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보호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실질적인 권한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김학용의원안 제5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당사자등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세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김학용의원안>

제 5 장 당사자의 보호

제27조(비밀유지의무 등)

제28조(당사자등의 보호)

제29조(보호조치 신청)

제30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제31조(보호조치 신청의 기각)

제32조(보호조치 권고 등)

인권침해에 관한 구제를 위한 군인권보호관의 권고권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권고’는 대등관계의 기관간의 협조의무 정도라는 점에서 이행의 강제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권한의 구체성에 의문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이를 묵살할 경우에 권리보호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권고의 실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군인권보호관의 권리구제에 관한 조치는 실질적인 권한으로서의 기능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한관계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군인권보호관의 권고에 대하여 2중3중의 확인절차와 검토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먼저, 군인권보호관의 인권침해에 관하여 형사상의 수사 혹은 징계조치,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적극적인 조치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관련 사항의 조치결과를 반드시 군인권보호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결과가 미흡한 경우의 조치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진정의 당사자에 관한 조치상황과 결과에 관한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여 그 결과도 함께 보고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보고된 결과는 국무회의와 국회에 보고되도록 하고, 조치미흡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과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제도개선이나 관행의 시정과 같은 권고는 개선과 시정을 위한 조치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직접적인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상태는 아닌지만 제도나 관행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지속성을 변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다양한 점검과 검토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즉, 단순한 이행노력이나 권의 존중 등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평가방법과 검토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1. 저서 및 논문

-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내 군인권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2002.
- 국가인권위원회, 군 사법제도 운영 및 인권침해현황 실태조사, 2003.
- 국가인권위원회, 여군 인권상황 실태조사, 2012.
- 국가인권위원회, 군 수사와 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15.
-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4.12.11.
- 국민권익위원회, 「국방 옴부즈만」 기능강화 필요성, 국회 설명자료, 2015.4.2.
- 군인권센터,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해외 사례 검토 및 입법방향 연구, 연구용 역보고서, 2016.
- 군인권센터 자료실, ‘국방 옴부즈만’ 기능강화 필요성, <<http://mhrk.org/download/>, 17년 8월8일 검색>.
- 김이수, 한국 군사법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정현, 미국의 군인복무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4.
- 문성호, 옴부즈맨과 인권, 한국학술정보, 2007.
- 박성현, 군 사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할관, 심판관제도를 중심으로 -,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박연규, 평시 군사법제도 운영 개선에 관한 연구 : 장병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송영선, 군기확립! 군인권 보호! 강한 군대 만드는법!: 군 사법제도 개혁법률 쟁점과 전망, 2007.

안보경영연구원, 군내 인권침해 구제제도 발전방안 연구, 2010.

양태건,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5.

지대남, 미국의 군사법제도에 있어서 지휘관의 권한, 공법학연구 제12권제1호(2011).

지대남, 한국과 미국의 군사재판제도의 비교, 헌법학연구 제17권 제1호(2011).

하동원, 한국형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1.

허재석, 군 사법제도 개혁방안 연구, 배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황창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관한 입법평론, 입법학연구 제14집 제1호(2017).

Frederick Bernays Wiener 「American Military Law in the light of the first Mutiny Act's Tricentennial」, Military Law Review, Vol. 126, 1989.

2. 판례

헌재 2010.10.28. 2008헌마438

Solorio v. United States, 483 U.S. 435 (1987)

Middendorf v. Henry 425 US 25(1976)

United States v. Booker(C.M.A. 1977)

Weiss v. United States, 510 U.S. 163 (1994)

3. 웹사이트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6/21/contents>,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https://servicecomplaintsombudsman.govsite.com/wp-content/uploads/sites/8/2016/02/OSC-O-Annual-Report-2016.pdf>,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https://www.gov.uk/guidance/armed-forces-service-complaints-process#making-a-service-complaint>,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http://armedforcescomplaints.independent.gov.uk/howtocomplain.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http://www.au.af.mil/au/awc/awcgate/ucmj.htm>,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https://www.mcmilitarylaw.com/uploads/6/6/2/2/66228603/mcm_2016.pdf, 최종접속 2017년 11월 10일.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부 록

- 군인권 보호관 설치안 비교
- 종합 검토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부 록 : 참고자료

<군인권 보호관 설치안 비교1>

구 분	국회 내 설치	총리실 내 설치 (권익위 활용)	인권위 내 설치 (상임위원 활용)
현 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에 ‘고충민원 조사요구권’ 신설 검토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국무총리 소속(장관급) ○(인력) 국방보훈민원과(15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특채, 군파견 등 전문인력 9명 ○(대상) 군사,국방,병무,보훈 등 국방 분야 고충민원전체 ○(권한) 조사권, 자료제출, 출석요구권, 시정권고·의견표명 등 ○(근거) 국민권익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 독립기관(장관급) ○(인력) 군인권팀(4명) ○(대상) 인권침해, 차별사안에 한정 ○(권한) 직권조사권, 자료제출·출석요구권, 징계요구권 등 ○(근거) 국가인권위법
장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회(국방위) 대정부 통제기능과 연계될 경우 시정권고 등의 실효성 확보 및 권한행사 용이 ○군 인권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별도 조직 신설없이 추가권한 부여만으로 군옴부즈만 기능 수행 가능 ○기존 전문인력 및 오랜 경험 활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6년 이후 연간 2,000여건의 장병고충처리, 조사관 전문역량 축적 ○타 기관에 비해 권익구제율이 높아 군장병 권익보호에 유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용률 20%, 수용률 94% ○국방부와 다양한 업무 공동수행으로 협조시스템 구축 및 권익위에 대한 이해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능수행으로 객관적 조사 가능 ○권익위에 없는 직권조사권 보유 등 인권조사 관련 권한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타·성폭행 등 인권사안에 대해 가해자 징계요구 등 가능 ※권익위는 고충민원 접수시만 가능 ○인권위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인권전문기관’이라는 대국민 인지도가 높음

1) 15년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임(군인권센터 자료실, ‘국방 옴부즈만 기능강화 필요성’<<http://mhrk.org/download/>, 17년8월8일 검색>

구 분	국회 내 설치	총리실 내 설치 (권익위 활용)	인권위 내 설치 (상임위원 활용)
		<p>협조도가 높음</p> <p>○입대 전부터 전역 후까지 종합적 장병고충 처리 가능</p>	
단 점	<p>○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과다한 통제로 삼권분립 위협 ※의회내에 군사옴부즈만 을 설치한 독일은 의원 내각제 채택</p> <p>○정치적 중립성·객관성 확 보 곤란 -보호관이 국회 국방위 와 연계(위임·지시)하여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 치적 중립성 관련 논란 소지</p> <p>○입법부 권한강화에 대한 비판</p> <p>○행정부 내 옴부즈만 기 구와의 기능중복 문제 발생</p> <p>○별도 법률 제정 및 조직 구성으로 시간 및 비용 부담</p> <p>○국회 내에 설치할 경우 실무를 위한 사무처가 없어 조사·처리 기능 수 행 불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 처는 입법·예산 지원업 무 수행기관이어서 조 직의 성격 및 권한 내용 이 상이</p>	<p>○출범 당시 고충위의 군옴부 즈만 2개과가 1개과로 축소 되어 군 인권 보호 애로</p> <p>○고충민원 접수 시에만 조사 가 가능하여 선제적 대응에 미흡 ※부대방문권·직권조사권 부여로 해결 가능</p> <p>○권익위 출범기간('08)이 짧 아 인권위('01)에 비해 국민 들의 인지도가 낮음</p>	<p>○연간 처리건수 및 조사경험 이 상대적으로 적음(연간 100 여건)</p> <p>○직권조사권이 있음에도 군 인권 보호 성과 미흡</p> <p>○1년 이내 발생사건 중점처 리로 폐쇄적인 군의 특성상 수년간 은폐된 장기사건 처 리 불가 -'40년 전 군부대 폭행' 사 건 등 장기 민원사건 다수 발생</p> <p>○장병의 민원신청 혼란 및 정부 업무 혼선 우려 -인권침해와 고충민원을 명 확하게 구분 곤란, 기관 간 업무처리 혼선</p> <p>○협소한 업무범위로 타 기관 과 협조시스템 구축이 미흡</p> <p>○군인권보호관의 차관급 기 구화로 대외적 위상 저하</p> <p>○가해자 처벌 등에 한정되어 종합적 고충처리 불가</p>

<종합 검토2>

구 분	내 용	국회 설치안	총리실 설치안	인권위 설치안
공정성	▶ 기구의 독립성 ▶ 처리과정·절차의 객관성	○ (정치적 중립성 논란 우려)	○	○
전문성	▶ 조사처리 경험과 노하우	×	○ (연간 2,000건)	△ (연간 100여건)
효과성	▶ 인용률, 수용률 등 권익구제의 실효성	비교 불가	○ (인용률 20%, 수용률 94%)	△ (인용률 4.8%, 수용률 87%)
효율성	▶ 별도 설치로 인한 조직·인력·비용 부담 ▶ 기능 중복 여부	×	○	×
이용 편의성	▶ 민원창구의 단일화 ▶ 조사 대상 및 기간 제한 ▶ 종합적·입체적 민원 처리	×	○	×
선제대응	▶ 직권조사권(부대방문권)	비교 불가	×	○
인지도	▶ 대국민 인지도	비교 불가	△ (장병 대상 교육·홍보로 해결)	○

2) 15년도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임(군인권센터 자료실, '국방 옴부즈만' 기능강화 필요성)<<http://mhrk.org/download/>, 17년8월8일 검색>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214
----------	------

발의연월일 : 2017. 1. 20.

발 의 자 : 안규백 · 이용득 · 이동섭

전혜숙 · 조승래 · 이춘석

원혜영 · 김정우 · 이찬열

김해영 · 김종대 · 권철승 문희상 · 임종성 · 김경협

이원욱 · 강훈식 · 이종걸 전현희 · 소병훈 · 김병관

윤후덕 · 설 훈 · 홍익표

최인호 · 박 정 · 박주선

의원(27인)

제안이유

군인은 그 담당하는 임무 및 소속된 조직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신분적 지위에 따라 일반국민에 비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으나, 군인 역시 국가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임. 따라서 군인의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 부당한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함.

'05년 28사단 김일병 사건, '11년 해병대 기수열외 사건, '14년 28사단 윤일병, 22사단 임병장 사건, '16년 53사단 폭발사고 등 끊임없이 장병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위협하고, 장병 가족들을 불안하게 하는 구타·가혹행위 등의 병영부조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갈수록 커져만 가는 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회는 2015년 12월 9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군인의 기본

권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군인에 대한 기본권침해를 조사하고 해소할 수 있는 군인권 보호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음. 따라서 우리나라 군의 역사적 특수성과 폐쇄성에 막힌 행정기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법부에 새로운 감시·감독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2016년에 영국에서도 군 옴부즈맨을 설치하였듯이 군에 대한 의회통제의 당위성이 인정되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음.

이에 국민을 대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고 그 권한과 임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이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본원적으로 가지는 기본권적 지위를 재확인하고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선진적인 군 문화 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인을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군 및 사회 전반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군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창출하는 것을 법률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적용되는 군인과 준용되는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군무원 등의 사람에 대하여 이 법률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국회의장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도록 함(안 제6조).
- 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군인기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국가인권위원회 등 인권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및 군인인권침해 행위의 방지

와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7조).

- 마.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함(안 제8조).
- 바.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하는 등 신분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
- 사. 군인기본권을 침해당한 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하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음(안 제14조).
- 아.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에 대하여 요건에 따라 각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이송하여야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의 경우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국방부장관등)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안 제17조).
- 차.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장소·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등의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질문하거나 관련되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질문·검사권을 가짐(안 제18조 및 제19조).
- 카.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기각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함(안 제21조).
- 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등에게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와 각종 시정 또는 개선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진정 조사 결과에 따라 고발하거나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음(안 제22조 및 제23조).

- 파.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26조).
- 하.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하되,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28조 및 제29조).
- 거.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 관련 사실을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 너.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긴급구제조치를 방해한 사람,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규백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0호),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군인을 기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군인의 기본권에 대한 군 및 사회 전반의 의식 향상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 군인의 기본권이 존중되고 공동체의 안보와 의식 발전에 기여하는 선진적인 병영문화를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인을 말한다.
2. “군인의 기본권”이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장에 따라 보장되는 군인의 기본권을 말한다.
3. “군인의 기본권 침해”란 군인의 기본권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 10조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 범위를 넘어서 침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적용 범위) 이 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조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받는 사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4 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군인이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군인의 기본권침해와 군인의 기본권 개선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 5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군인의 기본권 침해(이하 “군인기본권 침해”라 한다)에 대한 진정과 조사 등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이하 “군인기본권보호”라 한다)에 관한 업무 수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 2 장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임면 등

제 6 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설치와 지위) ①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국회의장 소속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을 둔다.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보장된다.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국회군인권보호관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 및 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7 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군인이 군인의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제기한 진정의 조사 및 구제
2.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군인의 기본권침해 및 군인의 기본권상황에 관하여 조사를 요청한 경우 그에 대한 조사 및 구제
3.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조사 및 구제
4. 군인의 기본권보호에 관한 정책의 총괄, 종합 및 조정
5. 군인의 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이행 실태의 확인 및 평가
6. 군인의 기본권보호와 관련된 정책·제도 및 법령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7. 군인의 기본권상황에 관한 정기·불시 실태조사
8. 군인의 기본권보호 및 군인의 기본권침해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9. 국가인권위원회 및 민간 인권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10. 그 밖에 군인의 기본권침해 방지 및 군인의 기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를 한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

제 8 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면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임면한다.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제 9 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회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3. 국회군인권보호관 임명일 전 3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10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신분보장)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국회운영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국회의장이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직 등

제11조(공무원의 임용) 국회군인권보호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임면한다. 다만, 국회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처)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국회군인권보호관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지휘를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⑤ 사무처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면하고, 6급 이하 공무원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임면한다.

⑥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보고서 작성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매년 전년도에 활동 내용과 군인기본권 침해 방지와 군인기본권보호 관련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의장과 국회운영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와 관련이 있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는 그 보고서에 대한 의견, 조치 결과 또는 조치 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4 장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조사와 구제

- 제14조(조사 대상)** 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② 군인은 복무 중에 다른 군인이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당하거나 행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 또는 진정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피해자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기본권침해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1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의 기본권침해 정도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사 또는 구조가 필요하거나 사전 통보 시 증거인멸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그 밖의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진정의 각하 등)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却下)할 수 있다.

1. 진정의 내용이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군수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 중인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 또는 「군형법」 제48조부터 제63조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다만, 진정 내용이 구체적이고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진정이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9.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10.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을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정을 이송받은 기관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요청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처리 결과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④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각하하거나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4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16조(다른 구제 절차와 이송) ①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지체 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제15조에 따라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과 같은 사안에 관한 수사가 피해자의 진정 또는 고소에 의하여 시작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이송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받은 기관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수사기관과 국회군인권보호관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의 방법)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의 조사를 위하여 「군사기밀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그 소속 기관 등에서 작성한 모든 정보 및 기록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진정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진정인·피해자·피진정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鑑定)
4.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부대·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③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장소 또는 시설에 당사자나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④ 제2항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피진정인에 대한 출석 요구는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한 행위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 ⑥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은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국회군인권보호관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그 장소 또는 시설을 관리하는 장 또는 직원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⑧ 제2항에 따라 조사의 대상이 된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 관계 부대·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물건 또는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조사 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1. 「보안업무규정」 제4조제1호에 해당되는 국가비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9조(질문·검사권)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이 있는 곳 또는 관계인에 관하여 파악하려면 그 내용을 알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검사에 관하여는 제1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0조(동종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의 입회) ① 군인기본권침해 행위 사건 중 동종 사건으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의 조사 또는 수사에 대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요구하면 해당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동종 사건에 국회군인권보호관 및 소속직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의 입회를 요구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진정의 기각)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조사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 진정의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구제조치 등의 권고)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이나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그 소속 부대·기관 또는 감독 부대·기관의 장(이하 “국방부장관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조사대상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동일하거나 유사한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법령·제도·정책 및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권고사항의 이행계획을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게 문서로 설명하여야 한다.
- ⑤ 국회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권고한 내용과 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등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 제23조(고발 및 징계 권고)**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하여야 한다.
-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군인기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이나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국방부장관등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국방부장관, 각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은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국방부장관등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권고 또는 고발을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국회군인권보호관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발을 한 국회군인권보호관이 검찰관 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나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군사법원 또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26조(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진정을 접수한 후 조사 대상 군인 기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정인이나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피진정인 또는 국방부장관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의료·급식 및 의복 등의 제공
2. 부대·기관이나 장소 또는 시설 및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감정 또는 다른 부대·기관이 하는 검증 및 감정에 대한 참여
3. 군 교도소(지소·미결수용실 및 헌병대 영창을 포함한다) 등의 군 내 구금·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의 구금 또는 수용 장소의 변경
4. 군인기본권침해 행위의 중지
5. 군인기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6.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 신체 및 정신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인 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명예의 보호, 증거의 확보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인 및 국방부장관등에게 그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27조(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대한 의견제출)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의 기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조사하거나 처리한 내용에 관하여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국회군인권보호관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 또는 헌법재판소에 사실상 및 법률상의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8조(조사의 공개)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정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진정에 대한 조사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29조(처리 결과 등의 공개) 국회군인권보호관은 이 장에 따른 진정의 조사 내용과 처리 결과, 국방부장관등에 대한 권고와 국방부장관등이 한 조치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공표가 제한되거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보 칙

제30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국회군인권보호관, 그 소속 직원 또는 그 직에 재직하였던 사람이나 제33조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직원 또는 파견되었던 사람 등 이 법에 따라 군인기본권침해 방지 및 군인기본권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아닌 자는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3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사(公私) 단체(이하 이 조에서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등의 장은 국회군인권보호관과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등의 장은 국회군인권보호관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처우 등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불이익 금지와 지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에 진정·진술·증언·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회군인권보호관은 군인기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 또는 자료 등을 발견하거나 제출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별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 6 장 별 칙

제36조(국회군인권보호관의 업무 방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2.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
3. 위계(僞計)로써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4. 제14조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조사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의 군인기본권침해 행위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사람

② 친족이 본인을 위하여 제1항제4호에 따른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7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 위반)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인적사항 또는 진정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자격 사칭) 제30조를 위반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국회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비밀 유지의 의무 위반) 제31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긴급구제 조치 및 조사 등 방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6조제2항에 따라 국회군인권보호관 또는 그 소속 직원이 하는 조치를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진술서 제출요구 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이유 없이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국회군인권보호관의 자료 등의 제출요구 및 사실·정보 조회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 등을 제출한 사람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82
------------	------

발의연월일 : 2017. 6. 14.

발 의 자 : 김학용 · 김성태 · 김무성 박성중 · 김승희 · 김재원
문진국 · 송희경 · 김종석
이종명 · 김용태 의원
(11인)

제안이유

국군 장병의 인권보장 및 고충처리를 위하여 군 내부적으로 권리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타·가혹행위 등 인권침해행위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하락하고 있음.

이에 군 관련 사건 조사의 특수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특별보호관을 설치하고,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자료제출요구권·부대방문권·진술청취권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군 관련 사건을 보다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장병의 인권신장과 군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군 관련 사건 조사의 특수성과 효율성 및 장병의 신속한 구제를 위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을 설치하고, 독립성을 보장함(안 제4조).
- 나.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자격, 임기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1)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 2)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함.
- 다. 군인권특별보호관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처를 설치하고, 처장·5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10조).
- 라.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 1) 군 내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구제 외에 군 복무 중 발생하는 고충사항에 대하여도 처리할 수 있도록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권한 범위를 넓히고, 그 밖의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이나 직권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
 - 2) 인권침해사건 및 고충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부대방문권, 자료제출요구권을 부과되,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군사상 보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하도록 함.
- 마.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권고등(안 제17조)
- 1) 군인 및 군무원의 인권보장 및 병영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제도 등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음.
 - 2) 인권 침해사건에 관하여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고발 또는 징계를 권고할 수 있음.

- 3)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부터 조치사항의 권고를 받은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그 이행 여부에 관하여 보고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조치사항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시킴.

바.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안 제18조)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조사 및 처리를 한 사항에 관하여 매 분기별국회 및 대통령에게 정기보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개별보고를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함.

사. 비밀유지의무 등 신설(안 제27조부터 제39조까지)

- (1) 인권침해행위 등을 진정한 진정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 및 그 조사를 담당한 사람으로 하여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함.
- (2) 진정인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진정인 등에 관한 신원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 (3) 위 사항을 위반하여 진정인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 또는 침해한 경우에 벌칙조항을 마련함.

법률 제 호

군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권특별보호관 제도의 신설을 통해 군인 및 군무원의 존엄성을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병영문화 조성 및 강군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인”이란 「군인사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군인권침해”란 군인 또는 군무원(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 또는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를 말한다.
3. “고충”이란 군인등이 근무조건, 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갖는 모든 불만이나 불편사항(군인권침해를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을 말한다.
4. “피해자”란 군인권침해를 당한 군인등을 말한다.
5. “진정인”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진정한 사람을 말한다.
6.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가.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각 군 및 소속 부대
 - 나.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
 - 다.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른 행정기관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 해결을 위한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4 조(지위)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국방부 소속으로 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제 5 조(정치적 중립)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제 2 장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명과 신분보장

제 6 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명)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관련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대학에서 법률학·심리학·정신건강의학·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여 부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인권 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군인권특별보호관 후보 추천을 의뢰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군인권특별보호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명의 후보자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은 제2항의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에서 1인을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군인권특별보호관 임명 및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 8 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 9 조(겸직금지의 의무 등)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군인권특별보호관 외의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직
-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군인권보호처)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 직속으로 군인권보호처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처에는 군인권보호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처장 및 소속 직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추천으로 국방부장관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처장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지휘를 받아 군인권보호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그 밖에 군인권보호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우)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한다.

제12조(파견요청 등)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군인등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인권특별보호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등의 파견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소속 기관으로 복귀한 사람은 다시 파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군인등은 그 소속 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공무원 또는 군무원을 파견한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와 권한

제13조(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진정이 제기된 군내 인권침해 및 고충에 대한 조사와 구제
2. 국방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또는 직권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조사
3. 진정인과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의 보호

4. 군 인권개선, 고충처리 및 병영문화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5. 군내 인권침해 구제 제도 시행 실태의 감독
6. 그 밖의 군 인권개선, 고충처리에 관한 제도 정책의 제안 및 건의
 - ② 그 밖에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이나 사실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 조회에 응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외교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 사항인 경우
2. 범죄 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진술청취)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진정인, 피진정인, 피해자, 증인 또는 참고인 등(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청취하거나 진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당사자등의 소속 기관 또는 부대의 장은 당사자등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방문조사)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방문조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려는 경우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또는 나목의 기관 또는 부대를 방문하려는 군인권특별보호관(제2항에 따라 조사를 위임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정권고등)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19조에 따른 진정의 조사결과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이 확인되면 관계 기관에 제도·정책·관행 등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이하 “시정권고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등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등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등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시정권고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정권고등의 이행계획을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등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시정권고등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등과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시정권고등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 통지한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18조(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기보고서를 매 분기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군인권침해에 관한 사항

2. 고충에 관한 사항
 3. 시정권고등과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
 4. 당사자들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인권특별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면 통지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대통령에게 수시보고하고, 국방부장관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 4 장 진 정

- 제19조(진정) ①** 군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인 군인등 또는 군인권침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② 고충이 있는 군인등은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③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정의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다른 구제절차와 이송)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진정을 그 국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1. 진정의 내용이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구제 절차에 따라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에 제출하려는 것이 명백한 경우
 2. 제21조에 따라 진정을 각하하면서 다른 관계 기관에 그 진정을 이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이송한 경우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송 받은 기관은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요청하는 경우 그 진정에 대한 처리 결과를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진정의 각하)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접수한 진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한다.

1. 진정의 내용이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진정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진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다만,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또는 민사상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건으로서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조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본문의 기한 내에 진정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6. 진정이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7.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8. 군인권특별보호관이 기각한 진정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진정한 경우
 9. 진정의 취지가 그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진정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진정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진정을 각하할 수 있다.
- ③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진정을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진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3항에 따라 진정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또는 진정인에게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제22조(진정의 기각)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진정을 기각한다.

1.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진정을 한 사람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고발 및 징계 권고)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진정을 조사한 결과 진정과 관련된 범죄행위가 발견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방부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진정을 조사한 결과 심각한 수준의 군인권침해 또는 폭행·폭언·가혹행위 등이 있다고 인정하면 피진정인 또는 이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고발을 받은 국방부장관, 각 군 참모총장 또는 검찰총장은 그 수사결과를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부터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제24조(의견진술의 기회 부여)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17조에 따른 시정권고등이나 제23조에 따른 고발 또는 권고를 하기 전에 피진정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진정인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화해의 권고 등)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제17조에 따른 시정권고등이나 제23조에 따른 고발 또는 권고를 하기 전에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화해를 권고하거나 화해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해안에는 이 법의 목적을 위반하는 조건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은 화해안을 작성함에 있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③ 진정인(피해자가 진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에서 같다) 및 피진정인이 군인권특별보호관의 화해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진정인·피진정인 및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서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화해조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화해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며, 화해조서는「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26조(긴급구제조치의 권고)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이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진정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직권으로 또는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긴급구제조치”라 한다)를 취할 것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긴급구제조치로 인하여 군사 임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권 침해 행위 및 폭행·폭언·가혹행위 등의 중지

2.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3. 피해자의 의료시설 이송
4. 그 밖에 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조치
 -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긴급구제조치를 취하고 그 내용을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한 후에 긴급구제조치가 군사 임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진정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취소할 수 있다.
 - ④ 군인권특별보호관은 긴급구제조치를 권고하거나 긴급구제조치 권고를 취소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진정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장 당사자등의 보호

- 제27조(비밀유지의무 등)** ① 군인권특별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처의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공개된 사항이나 공지의 사실이라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누구든지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이나 진정의 내용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군인권특별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처의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당사자등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진정이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의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당사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역, 제적,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진급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보직해임, 보직변경, 휴가 제한,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근무평정 또는 성과평가 등에서의 차별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과도한 업무 부여,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제29조(보호조치 신청) ① 당사자들은 제28조의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군인권특별보호관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보호조치는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불이익조치가 계속된 경우에는 그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진정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1년 이내에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그 밖에 보호조치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보호조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1. 불이익조치의 원인이 된 진정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한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이 지나 신청한 경우
3. 각하결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각결정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동일한 불이익조치에 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에 의하여 이미 구제를 받은 경우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③ 군인권특별보호관은 보호조치 신청을 각하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인권특별보호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한 사람에게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제31조(보호조치 신청의 기각)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보호조치 신청을 조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기각한다.

1. 신청의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2. 해당 불이익조치가 진정과 무관함이 명백한 경우
 3. 이미 당사자등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군인권특별보호관은 보호조치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신청한 사람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보호조치 권고 등) ① 군인권특별보호관은 보호조치 신청을 조사한 결과 당사자등이 제28조의 불이익조치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불이익조치의 중지
 2. 원상회복
 3. 당사자등에 대한 신변보호
 4. 당사자등의 의료시설 이송
 5. 동일하거나 유사한 불이익조치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6. 그 밖에 당사자등의 손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② 제1항에 따라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의 소속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 ③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 대한 고발 및 징계 권고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④ 군인권특별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 제3항에 따른 고발 및 징계 권고를 하기 전에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준용규정)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화해의 권고 및 당사자등에 대한 긴급보호조치에 관하여는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 5 장 보 칙

제34조(자격 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군인권특별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처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전시 특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이 법에 따른 군인권특별보호관의 업무와 권한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제 6 장 벌 칙

제36조(업무 방해죄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군인권특별보호관 또는 군인권보호처 직원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방해한 사람
2. 군인권침해 또는 고충에 관한 증거를 훼손하는 등으로 인하여 그 증거의 효용을 해친 사람

제37조(비밀누설) 제27조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자격 사칭) 제34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보호조치 신청의 방해 등) 제19조에 따른 진정 또는 제29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을 방해하거나 이를 취하하도록 강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조직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의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국민권익위원회의 소관 사무 중 군인권침해 및 고충 해결에 관한 사무는 군인권특별보호관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인권특별보호관 승계사무와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인권침해 및 고충과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행한 구제, 시정권고, 진정의 각하 또는 기각 그 밖에 진정인 또는 민원인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군인권특별보호관의 행위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군인권침해의 진정 또는 고충민원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되지 않고 조사 중에 있는 진정 또는 고충민원은 군인권특별보호관에 대한 진정으로 본다.

제 3 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검찰총장, 군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장관”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②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군인권보호관)”을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 중 “군인권보호관”을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 한다.

① 군인권침해 또는 군인의 고충에 대한 구제를 위하여 군인권특별보호관을 둔다.

제43조제1항 중 “군인권보호관”을 “군인권특별보호관”으로 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52
----------	------

발의연월일 : 2016. 11. 1.

발 의 자 : 백혜련 · 강병원 · 이원욱
윤관석 · 김경진 · 소병훈
김현미 · 홍익표 · 박 정
김해영 · 김성수 · 박광온
김관영 · 정성호 · 위성곤
이철희 · 박범계 · 황주홍
노웅래 · 박남춘 · 임종성
김철민 · 김민기 · 심재권
이해찬 · 이찬열 · 최명길
한정애 의원(28인)

제안이유

군 인권에 대한 피해사례와 그 중요성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을 보호하는 법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미흡한 문제가 심각함.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어 군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군인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을 위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인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인등 및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해 정의하여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군무원·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군 내 인권침해와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 나.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고, 군인권보호관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군인권보호관은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51조 신설).
- 다.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에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 라. 군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7항).
- 마. 위원회가 매년 작성하고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는 위원회의 전년도 활동내용과 인권상황 및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서에 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 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검찰총장 및 관할 수사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 또는 각군 참모총장에 계도 수사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및 제2항).
- 사.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부대 방문조사, 진정에 대한 각하사유 특례 및 조사방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별도의 장을 신설하도록 하며 군부대 방문조사 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사정이 없는 한 국방부장관은 방문 중단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장 신설).
- 아. 정당한 이유 없이 군부대 방문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70조제1항제1호).

법률 제 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군인등”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군무원·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말한다.
7. “군 내 인권침해”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3”을 “4”로, “11”을 “1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4”를 “6”으로, “2”를 “3”으로 하며,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중 각각 1명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제16조제1항 중 “둔다”를 “두며, 사무처에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둔다”로 한다.

제2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는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29조제1항 중 “보고서”를 “보고서(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을 각각 “검찰총장,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 내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5장(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6항(제56조부터 제63조까지)을 각각 제6장(제58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장(제63조부터 제70조까지)로 하고, 제5장(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 장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

제51조(군인권보호관) ① 상임위원 중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군인들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을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들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국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회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제1항의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

제52조(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들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

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군인권보호위원장으로 하고,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군인권보호위원장이 군인권보호관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⑤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임기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53조(군인권보호위원회 업무)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의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의 개시결정,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위임한다.

1. 군인들의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3.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개시
4. 군인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군인들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군 내 인권침해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8.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그 밖에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54조(군부대 방문조사) ① 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방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군부대의 직원 및 군부대 소속 군인등과 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진정인이 입증하면 그 사정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진정을 각하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

제56조(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이하 “자료제출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등의 장 또는 관계인은 성실히 협조해야하며, 제36조제7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

제57조(다른 규정의 준용)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대하여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다른 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중전의 제58조) 중 “제51조”를 “제58조”로 한다.

제66조(중전의 제59조) 중 “제52조”를 “제59조”로 한다.

제70조(중전의 제63조)제1항제1호 중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4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3조”를 “제60조”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신설></p> <p><신설></p> <p>제 5 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p> <p>1.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다) <후단 신설></p> <p>2.·3. (생략)</p> <p>③ ~ ⑧ (생략)</p>	<p>제 2 조(정의) _____</p> <p>_____.</p> <p>1. ~ 5. (현행과 같음)</p> <p>6. “<u>군인등</u>”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兵)·군무원·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을 말한다.</p> <p>7. “<u>군 내 인권침해</u>”란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군인등의 복무 중 업무수행 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말한다.</p> <p>제 5 조(위원회의 구성) ① _____</p> <p>_____4_____13_____.</p> <p>② _____.</p> <p>1. _____6_____3_____</p> <p>— 이 경우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중 각각 1명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p> <p>2.·3. (현행과 같음)</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사무처)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사무처를 둔다.</p>	<p>제16조(사무처) ① _____ _____두며, 사무처에는 제51조 제1항에 따른 군인권보호관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군인권본부를 둔다.</p>
<p>② ~ ④ (생략)</p> <p>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 ⑥ (생략)</p> <p><신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인권교육과 홍보)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위원회는 군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교육을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p>
<p>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해마다 전년도의 활동 내용과 인권 상황 및 개선 대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29조(보고서 작성 등) ① _____ _____보고서(군 내 인권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_____.</p>
<p>② ~ ④ (생략)</p> <p>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의뢰를 받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① _____ _____검찰총장,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 내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_____.</p> <p>② _____검찰총장, 관할 수사기관의 장(군 내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_____.</p>

현행	개정안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5장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p> <p>제51조(군인권보호관) ① 상임위원 중 군 내 인권침해 방지와 군인등의 인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을 군 내 인권침해 방지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군인권보호관(이하 “군인권보호관”이라 한다)으로 한다.</p> <p>② 국회는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가가 선출하는 상임위원 중 1명을 제1항의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하여 선출한다.</p> <p>제52조(군인권보호위원회)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군인등의 인권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인권보호위원회를 둔다.</p> <p>②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군인권보호관을 군인권보호위원장으로 하고, 군인권보호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군인권보호위원회의 회의는 군인권보호위원장인 군인권보호관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④ 군인권보호위원회에는 심의사항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p> <p>⑤ 군인권보호위원회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과 전문위원의 자격·입기 및 위촉 등에</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229 433 332 463"><신 설></p>	<p data-bbox="743 343 1218 423">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p> <p data-bbox="719 433 1218 701"><u>제53조(군인권보호위원회 업무)</u> 군인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의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의 개시결정, 제5호,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위임한다.</p> <ol data-bbox="743 721 1218 1566" style="list-style-type: none"> 1. 군인들의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 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군 내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및 시정·개선의 권고 3. 군부대 방문조사 및 직권조사 개시 4. 군인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5. 군인들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군 내 인권침해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7. 관련 행정기관과의 업무 협조 8.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 인권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9. 그 밖에 군 내 인권침해의 예방과 군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p data-bbox="719 1576 1218 1656"><u>제54조(군부대 방문조사)</u> ① 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p>
<p data-bbox="229 1576 332 1606"><신 설></p>	

현행	개정안
	<p>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써 군부대를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군부대의 장에게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미리 통지를 하면 조사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 국방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p> <p>④ 제1항에 따른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및 위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직원 및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을 지정하여 소속 직원 및 전문가에게 조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를 위임받은 전문가가 그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동반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군인권보호관, 위원,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이하 이 조에서 “위원등”이라 한다)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방문 및 조사를 받는 군부대의 장은 즉시 방문과 조사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하는 위원등은 군부대의 직원 및 군부대 소속 군인등과</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면담할 수 있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사실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p> <p>⑦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55조(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을 제기하기 어려운 사정을 진정인이 입증하면 그 사정이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을 신청한 경우가 아니면 진정을 각하할 수 없다.</p> <p>② 위원회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된 진정의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조사할 수 있다.</p> <p>제56조(조사의 방법에 대한 특례) ① 위원회(군인권보호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에게 일정한 장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하여 현장 조사 또는 감정을 하게 할 수 있다.</p> <p>② 위원회가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를 위하여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자료, 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p>
<p><신 설></p>	

현행	개정안
<p><신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u>제51조</u>(자격 사칭의 금지) (생략)</p> <p><u>제52조</u>(비밀누설의 금지) (생략)</p> <p><u>제53조</u>(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생략)</p> <p><u>제54조</u>(공무원 등의 파견) (생략)</p> <p><u>제55조</u>(불이익 금지와 지원)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별칙</p> <p><u>제56조</u>(인권옹호 업무방해) (생략)</p> <p><u>제57조</u>(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생략)</p> <p><u>제58조</u>(자격 사칭) <u>제51조</u>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제59조</u>(비밀누설) <u>제52조</u>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p>	<p>감정(이하 “자료제출등”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등의 장 또는 관계인은 성실히 협조해야하며, <u>제36조제7항제2호</u>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사나 계속 중인 재판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p> <p><u>제57조(다른 규정의 준용)</u>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업무, 군 내 인권침해 사건 조사에 대하여 이 장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다른 장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6장 보칙</p> <p><u>제58조</u>(자격 사칭의 금지) (현행 <u>제51조</u>와 같음)</p> <p><u>제59조</u>(비밀누설의 금지) (현행 <u>제52조</u>와 같음)</p> <p><u>제60조</u>(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현행 <u>제53조</u>와 같음)</p> <p><u>제61조</u>(공무원 등의 파견) (현행 <u>제54조</u>와 같음)</p> <p><u>제62조</u>(불이익 금지와 지원) (현행 <u>제55조</u>와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7장 별칙</p> <p><u>제63조</u>(인권옹호 업무방해) (현행 <u>제56조</u>와 같음)</p> <p><u>제64조</u>(진정서 작성 등의 방해) (현행 <u>제57조</u>와 같음)</p> <p><u>제65조</u>(자격 사칭) <u>제58조</u>————— _____ _____ _____.</p> <p><u>제66조</u>(비밀누설) <u>제59조</u>————— _____</p>

현 행	개 정 안
<p>징역,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u>제60조(긴급구제 조치 방해)</u> (생략)</p> <p><u>제61조(비밀침해)</u> (생략)</p> <p><u>제62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u> (생략)</p> <p><u>제63조(과태료)</u>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p> <p>1. <u>정당한 이유없이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u></p> <p>2.·3. (생략)</p> <p>② <u>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p> <p>③ ~ ⑥ (생략)</p>	<p>_____.</p> <p><u>제67조(긴급구제 조치 방해)</u> (현행 제60조와 같음)</p> <p><u>제68조(비밀침해)</u> (현행 제61조와 같음)</p> <p><u>제69조(별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u> (현행 제62조와 같음)</p> <p><u>제70조(과태료)</u> ① _____.</p> <p>1. _____ <u>제24조제1항 및 제54조 제1항에 따른</u> _____</p> <p>_____</p> <p>2.·3. (현행과 같음)</p> <p>② <u>제60조</u> _____.</p> <p>_____.</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입법평가 연구 17-15-⑦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2017년 11월 28일 印刷

2017년 11월 30일 發行

發行人 이 익 현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http://www.klri.re.kr>

값 8,000원

1.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978-89-6684-775-4 93360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